

여지를 확장시켰다.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67년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방대한 규모의 기지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계약이 있어야만 했으나, 이 조항은 1967년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미군의 사용권을 '소급' 인정해 버렸다. 즉 미군이 1945년 점령군으로 38선이남에 진주한 이래 일본군 무장해제과정에서 무상으로 접수했던 모든 기지와 시설, 한국전쟁 와중에서 극도로 불평등하게 체결된 대정협정, 마이어협정에 의해 1966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13년 동안 정발했던 모든 미군기지와 시설에 대한 사용권이 별도의 '협의절차없이' 인정돼 버린 것이다.

<표> 주한미군 공여지 현황

(출처: '94-'95 국방백서)

구 분	면적 (단위 : 만m ²)
국유지 (국방부 소유)	7,227 (27%)
민·공유지	19,335 (73%)
계	26,562 (100%)

* 1994년 말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현황은 총 96개소에 2억 6500만평방미터

(3) 미군은 방대한 미군기지를 돈한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풍여받는다.

미군의 기지 사용에 대해 공여(供與)라는 표현을 써 미군들이 공짜로 기지를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요약하면 주한미군에 대하여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한국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미국측은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다.

1993년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미군기지 무상 사용에 대한 비용은 매년 24억 달러 (약 1조 9천억 원)로 한국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연간 2조 원 정도를 미군에게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가 협소하고 땅값이 비싸 공업용지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집없는 설움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임대료 한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전국토의 주요 지역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돼도 미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것처럼 미군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서만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미국의 이익에서 미군의 주둔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기지의 무상사용은 명분도 없다.

방위분담금과 불법 미국 관련 시설

미국은 미군기지 무상사용에서 한 발더나아가 매년 엄청난 방위분담금을 챙기고 있다. 1996년도에 한국정부가 미군에 지불하는 방위분담금은 총 33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유지, 사유지 등 모든 토지

를 방위분담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군기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분담금으로 평가해 주고 있다.

또 미국측은 대사관 등의 시설을 공짜로 쓰고 있다. 93년도 감사원 보고에 의하면 주한미국대사관 건물과 터가 우리 정부 재산인데도 지난 10여년동안 한푼의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지 않고 미국에 내주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행정협정을 무시하고 군사시설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용산 미군기지 안에 약 8만평 가량의 미대사관 직원숙소와 위탁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미국문화원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4) 미군이 협의해야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본 협정 제2조 3항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같이 반환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미군이 기지를 반환할 때는 한미간의 합의를 통해서 한다는 규정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다. 그러나 미군이 기지 반환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동조항에 따르면 미군이 필요없게 된 기지라고 하더라도 한국측에서 아무리 반환을 요

구해도 미군이 수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반환여부는 전적으로 미군당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땅을 빌려주고도 돌려받는 것이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미군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이 얼마나 치욕적인 내용인가? 95년 6월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당시 국방부 노양우 관제보상과장은 미군측이 사용하지 않는 기지를 돌려받기 위해 미군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미군측이 양보(?)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고백한 바도 있다. 미일협정의 경우 미군의 기지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소멸되면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규정이다.

'부천속의 작은 미국'으로 일컬어진 오정동 미44공병대대는 54년 7월 오정동에 첫발을 디딘 이래 38년간 주둔해 오다 92년 9월 30일 파주군 봉일천 일대로 이전을 끝마쳤다.

인구밀도가 높고 주거공간이 부족한 부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미44공병대대 부지는 부대가 옮겨감과 동시에 시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미44공병대대 부지 13만평의 사용권은 부대 이전과 관계없이 여전히 미군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관계자는 "미44공병대대 부지의 사용권은 미44공병대대"라고 밝히고 "미군이 스스로 반환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44공병대대 부지 13만평은 미군의 사용권 주장때문에 부대가 이전한 지 2년 가깝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기지가 반환되었지만 시민들의 바

램과는 달리 그 자리에 한국군 기지가 조성되었다.

(5) 미군 시설과 기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리권한이 없다

(대규모 살상 무기에 대한 통제 불가)

본 협정 제3조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활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으로 일관해 왔으나, 미국측 자료 등에 일반적으로 91년도 이전까지 약 2,000여개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90년대 초부시 미 대통령의 전술핵 폐기 선언으로 현재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것도 확실치 않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는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 만큼이나 위험하다. 만약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우리 민족은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가 한국정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미군당국의 권한하에 있다면, 한국민의 의사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가공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반입 및 사용은 한국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사례 2] 동두천 미2사단 산불 참사

한국정부는 의무만 있고 권리 있는 없다. 기지를 빌려 준 경우에도 기지사용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되고 있는지를 감시,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나 한국정부는 미군기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다.

[사례 1] 한반도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존재 여부

한국에 핵무기가 있는지 여부는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이 소위 NCND 정책(금

(6)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은 일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협정 제4조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를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미군이 사용후 반환하는 기지와 시설 등에 대해서 미군은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완벽한 책임회피 근거가 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공군기지에서 하루 1천6백여톤의 각종 오폐수를 정화하지도 않은 채 흘러보내 근처 개천의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군쪽은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한국쪽이 미군측에 단속이나 처벌 법규를 적용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시설개선 명령을 묵살한 채 계속 방류하고 있고 정화시설 설치비용마저 한국쪽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92년 1월과 7월 부대안에서 방출되는 오폐수를 수거하여 수질오염도를 조사하니 모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각각 기준치 60ppm보다 훨씬 높은 112ppm과 121ppm을 기록함에 따라 같은 해 세 차례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다. 당시 평택군청은 “미군쪽이 폐수방류를 단속하려해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는 단속권한이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미군부대는 환경오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치외법권 지대”라고 단속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미군 관계자는 “한국정부에 정화시설비 설치비용으로 1천2백만달러를 요청했으나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거절되었다”며 “주한미군 군비를 주둔국에서 부담하는 추세에 비추어 정화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도 한국쪽에서 적극 부담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대구나 동두천, 포항 등 미군부대가 있는 한반도 전역이 대부분 이와같은 실정이다.

독일내에 미주둔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이 극심, 그 정화비용은 30억달러(약2조4천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군이 떠난 자리가 은통 유독성 폐기물이 버려져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7) 기타 조항의 문제점

① 전기 통신 장치

본 협정 제3조 2항 (나) (다) : 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 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 정부의 지정 통신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관계 법령과 협정의 범위내에서, 전자파 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장치, 또는 합중국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및 그 군속 등 4만명을 위한 AFKN방송이 4천만명이 보는 우리나라의 어느 텔레비전방송보다도 좋은 VHF 채널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이 AFKN방송을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차지하고 있다.

② 미군기지 운영에 대한 추가 경비부담

본 협정에는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특별조치 협정'에 의해 추가비용 규정, 더구나 기지이전 비용까지 대도록 하고 있다.

③ 기타

제12조 2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해에 합중국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보조 시설을 설치, 건립 및 유지할" 권한(?) 특권)을 부여한 것이고, 제20조는 합중국 군인뿐 아니라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이용하는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권한(?)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제24조는 "합중국이나 합중국의 하부 행정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허가증을 운전시험 또는 수수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인정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둔군인이 아닌 그들의 군속 및 가족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관례를 벗어난 포괄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역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미군 시설과 구역에 관한 법적 검토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국제법)

I. 문제제기

II. 미군 시설 · 구역의 법적 근거

III. 미군 시설 · 구역에 관한 행정협정의 문제점

1. 駐兵權의 인정
2. 시설 기지결정상의 문제점,
3. 토지사용료 문제 및 기지 임대료문제
4. 방위비분담문제,
5. 원상회복 반환의 문제
6. 시설과 구역 반환 절차상의 문제 (제2조 4항)
7. 시설과 구역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 (제3조)
8.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 각서(1990.6.25)의 평가

IV. 맺는 말

I. 문제제기

한미간의 불평등의 상징인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이하 행협:SOFA)이 지난 95년 11월 제1차 협상을 필두로 금년 1월말까지 종결키로 약속한지 벌써 7개월이 흘렀다. 많은 국민들은 협상과정과 그 협정의 개정윤곽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간간히 들려오는 언론보도에 따라 그 개정수준이 미일협정수준정도로 매우 양호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총선정국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사이 협상과정의 결과마무리도 지지부진했고, 당국은 그 결과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지난 1996년 3월 20-21일 와싱턴에서 제6차 마지막 공식협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협의된 안은 행협의 근본적 개정과는 거리가 멀다. 즉, 시설과 구역의 반환문제와 그리고 공여지 반환문제와 관련된 행협의 불평등요소 시정은 협상안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기지반환의 경우, 1988년 6공화국 출범직후, 왜곡된 한·미관계를 바로잡는다는 기치아래 용산미군기지 및 미대사관이전 계획을 발표해서, 6공화국 역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전협상을 추진했다. 1989년 서울시는 전체 용산부지를 민족공원화한다는 계획을 발표, 동년 8월에는 용산동 1가의 육군본부를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1990년 2월에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했으며, 동년 6월 25일에는 한·미 양국은 미 8군기지(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 각서를 교환하고, 이전비용을 한국정부가 전액부담하되 토지소요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하기로 한다"는 수준의 합의를 했다. 그러나 1996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합의각서와는 달리 미국은 과다한 이전비용 및 이전의 까다로운 조건을 제기해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그후 1993년 4월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용산미군기지를 포함하여 전국 19개 군부대시설의 교외이전사업을 추진중이었으나, 북한의 NPT탈퇴문제와 맞물려 이전 문제가 사실상 백지상태에 놓였다.¹⁾

1) 용산 미군기지 반환 논의의 경과 (## 자료: 일간신문의 기사자료를 근거로 정리)

1953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의 한국내 배치 권리를 한국이 미국에 대여함.

1988 6공화국 출범 직후, 뒤를린 한·미관계를 바로잡는다는 기치 아래 용산미군기지/미대사관 이전 계획 공표. 6공화국 정부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전협상 추진.

1989 서울시, 전체 용산부지를 민족공원화한다는 계획 발표.

1989.8 용산동 1가의 육군본부가 대전으로 이전.

1990.2 한·미 양국 이전 합의.

공여지²⁾ 반환의 경우, 199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 현황은 총 96개에 8,048萬평에 달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근본적 요인은 한미행협 제2조와 5조 (시설과 구역), 그리고 한미방위조약의 불평등성때문이다. 특히 행협 제2조는 1967년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미군의 사용권을 새로운 검토와 계약없이 '소급' 인정해 버렸다. 이에 따라 토지사용권이 1967년 행협이 발효해 미군공여지가 양도되면서 대상주민들에게 통고나 사전협의는 물론 보상금 한푼도 없이 토지소유자도 모르는 사이에 미군에게 넘어간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동두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미군의 공여지문제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공여지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96년 3월 동두천 광암동 쇠목마을의 주민들은 미군당국이 사유지에 텅크 8대를 들이대고 사격장을 재개하려고 하자 생존권의 박탈 및 사유

- 1990.6 한-미 양국 미8군기지(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 각서 교환. 이전 비용을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되 토지 소요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하기로 한다"는 수준의 합의.
1990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체결 조항과는 달리 미국을 강제할 근거조항 전무함.
그 후 관련부서인 외무부, 서울시와 아무런 협의 이뤄지지 못함.
- 1990.7 서울시와 미국, 대사관저를 경기여고 터로 옮긴다는 데 따른 재산교환계약서 체결.
여기서도 이전시기를 못박는 데 대해 미국측이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여, 이전시기 및 내용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권한 사항으로 남음.
- 1991.7 기지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 원칙 합의안 발표. 이전비용 17억달러 산정.
- 1991.9 미군기지 내 미대사관 용도의 8만평 제외해 달라고 주장. 이전비용 100억달러 주장.
민자당 발표 이전비용 추정액 2조 4천억(30억달러).
- 1992.4 주한미군 당국, 이전계획기간을 2000년으로 연기하자고 주장.
- 1992.11 용산가족공원 개장. 1959년이래 미군 골프장으로 사용하던 9만평의 공간을 돌려 받아 국방부가 8만평, 서울시가 1만평을 관리함.
- 1993.4 Y.S정권 수립 현재 용산미군기지 포함 전국 19개 군부대시설 교외이전사업 추진 중.
- 1993.5 국방부, 자체적으로 용산기지 이전방안 재검토.
용산기지/미대사관 이전 사실상 백지화됨.
- 1993.6 국방부, 오산기지 주변 더 매입을 취소. 용산기지 이전 2000년 이후로 사실상 연기됨.
청와대도 국방부 보고에 동의함.
- 1993.8 이전계획 취소, 청와대·국방부 동의. 외무부, 논의과정에서 소외됨.
- 1994 북한 해문제 논의의 와중에서 이전문제 사실상 백지화됨.

2) '미군 공여지'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기지, 시설, 구사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양도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미군공여지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서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등이 포함되며 미군공여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전용공여지: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땅(예: 미군기지, 훈련장, 기타 시설), 2) 지역공여지: 원래의 토지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땅으로 일종의 그린벨트 개념(예: 미군의 사격 훈련장 안전지대, 미군 송유관, 수도관, 전선 및 기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확보한 땅), 3) 임시공여지: 군사훈련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

재산권침해를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더구나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자신의 토지가 공여지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³⁾. 그러므로 미국측서는 사격장 재개지역이 행협에 따라 한국이 공여한『지역권 공여지』로서 사격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헌법상 개인 사유재산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락과 보상없이 국가가 타정부에 임의적으로 공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그런데 지난 3월 한미행협 협상 타결내용에는 이렇게 중요한 시설 및 구역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것은 한미행정협정 협상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행협협상에서의 주요 타결내용은 여론의 표적이 되었던 미군범죄피의자 신병인도 싫점으로 종전의 최종재판 완료後에서 기소後로 그리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인 경우 기소前에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형사관할권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미군 당국이 1990년에 용산기지이전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틸수 있고, 또 동두천의 공여지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한미행협의 불평등한 법적 문제점을 재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미군시설과 구역에 관한 행협의 규정을 알아본다.

II. 미군 시설과 구역의 법적 근거

미군시설과 기지를 직접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한미방위조약 제4조 및 제6조, 한미행정협정 제2조-6조, 그리고 관련된 법 규정은 행협 제 12조, 제20조, 제24조이다. 그리고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1990년 6월 25일 합의된 "군사시설이전에 관한 합의 각서"가 있으며, 개정 양해사항(1991.2.1) 중 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이 있다. 아래에 그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6동 쇠목마을 주민일동 탄원서, 1996년 4월 참조.

4) 이경우 행정협정이라는 국제조약과 헌법(제23조)이라는 국내법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이문제를 둘러싸고 헌법소원준비가 검토되고 있다.

1.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 4 조 및 제 6 조

1) 제 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며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2) 제 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2. 한미행정협정 제 2 조 - 제 6 조

1) 제 2조 :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은 본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 본 협정의 효력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채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 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 대한민국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없게 된때에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시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4. (가) 시설과 구역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정부가 이러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대한민국정부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수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사용시킬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합중국군대의 정상적인 사용목적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양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 3조 : 시설과 구역 - 보완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前記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2.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 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 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 정부의 지정 통신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정부는, 관계 법령과 협정의 범위내에서, 전자파 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장치, 또는 합중국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 4조 :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1. 합중국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본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시설과 구역에 대하여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합중국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제 5조 :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한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5) 제 6조 : 공공사업과 용역

1. 합중국군대는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지방행정기관이 소유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 공공사업 또는 용역이라 함은 수송과 통신의 시설 및 기관, 전기, 가스, 수도, 스팀, 전열, 전등, 동력 및 하수오물처리를 포함하되, 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합중국이 군용교통 시설, 통신, 동력 및 합중국군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공익사업과 용역을 운영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권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동정부의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2.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타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

6) 제 30조 : 개정

어느 일방 정부든지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국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7) 제 31조 : 효력

본 협정 및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3. 개정 양해사항(1991.2.1) 중 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

1) 제 2조 제 1항 (나)

1. 대한민국은 재사용권 유보하에 반환된 시설과 구역에 대해 유보된 재사용권포기를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 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합중국군대에 요청할 수 있고, 합중국 군대는 그러한 시설과 구역이 가까운 장래에 재사용될 것으로 예견되지 않으면 이러한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제 2조 제 3항

1.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는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목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주둔군 지위협정 제2조하에 제공된 모든 시설과 구역을 검토한다.
2.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어느 때든지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4.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 각서(1990.6.25)

- 1) 이전대상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 등 주요 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서울 북부지역 미군 부대의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용산의 사우스 포스트 일부지역에 잔류하게 된다.
- 2) 기지이전은 96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되 앞으로 주한미군사령부의 규모변화에 따라 일정 및 규모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 3) 이전장소는 앞으로 연합작전 체제의 효율성을 포함,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정확한 장소는 한미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한다.
- 4)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미국측은 토지소요를 최소화하고 건물통합화 등을 추진해 비용 최소화에 적극 노력한다.
- 5) 용산 미 8군 골프장은 현 남성대지역에 건설중인 대체 골프장을 미국측이 인수한후, 91년 3월 폐쇄하고 용산 골프장 내외시설은 제거, 이전한뒤 국방부측에 반환한다.

III. 미군 시설과 구역에 관한 행정협정의 문제점

상기 시설과 구역(Facilities and Areas)⁵⁾에 관한 조항들의 법적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보면 7가지로 분류된다.

- 1) 주병권의 인정 2) 시설 기지결정상의 문제점, 3) 토지사용료 문제 및 기지 임대료 문제 4) 방위비분담문제, 5) 원상회복 반환의 문제 6) 시설과 구역의 반환 절차상의 문제 7) 시설과 구역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 등 을 들수 있다.

1. 주병권(駐兵權)의 인정

한미상호 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

5) 시설과 구역은 기지(military bases)와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다. 과거 외국군대의 주둔의 경우에는 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영역국가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연혁적으로 치외법권적인 강력한 지위를 가지는 기지라는 용어가 주권개념과 충돌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외연이 좁은 시설과 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현재에도 구체적 개별 협정에 있어서는 군대의 보급, 수송, 통신, 항공 등의 기점이 되는 곳이라는 의미와 전투행위동 및 작전상의 터전이라는 의미로 시설과 구역대신에 기지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종류적인 용어인 기지와 구체적, 개별적 용어인 시설과 구역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1988, pp.35-36 참조

국은 이를 허여하며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되었고, 동조약이 미국에게 “주병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주병권에 따라 미군당국은 원하면 언제 어디든지 대한민국내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무상의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수 있다. 그리고 일단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하는 시설과 구역은 미군당국의 허락이 있어야 반환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점은 다른 상호방위조약과 구별되는 특색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상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병권 인정은 정전협정체제의 존속 및 미군당국의 작전지휘권 소지와 더불어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제도화시켜주고 있다. 더우기 상호방위조약 제6조는 그 효력기한을 무기한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관계가 종료될때까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등한 정립은 잠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미행정협정 제31조는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행협의 불평등구조의 시정은 이러한 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전면개정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2. 시설 기지 결정상의 문제점

행협 제 2조 1항 (가)에 의하여,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제협정은 “합동위원회”을 통하여 양국 정부가 체결 하도록 되어있고, 2항에서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들은 외형상으로는 양국정부의 합의에 따라 시설·기지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행협 제2조 1항 (나)에서 “본협정 발효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미군이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때에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채 한국에 반환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 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을 소급, 인정한 것으로서 1945년 38선 이남에 진주한 아래 일본 군무장해제과정에서 미군이 무상으로 접수 했던 모든 시설과 구역,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극도로 불평등하게 체결되었던 대전협정, 마이어 협정에 의하여 1966년 행협 체결될 때까지 13년동안 징발되었던 모든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로 “협의 절차없이” 소급 인정되고 말았던 결과이다. 따라서 제 2조 1항(나)는 앞서의 시설 기지 결정에 대한 “협의”를 사문화시켰다. 그러므로 기지사용의 우월적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한 행협 제 2조 (나) 조항부터 개정되어야 한다.

3. 토지사용료 문제 및 기지 임대료 문제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현재(1993.4 기준)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유지(2,247만평) 및 국유지(8,300만평)에 대한 연간 임차료는 24억 달러⁶⁾이라고 하며, 이를 미군기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인천직할시의 약 1.5배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⁷⁾. 무상사용은 미군기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측은 대사관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3년도 감사원 보고에 의하면, 주한미군건물과 터가 한국정부재산임인데도 지난 10년동안 한푼의 사용료나 임대료도 받지 않고 미국정부에 내주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협을 무시하고 용산미군기지 안 8만평 가량의 터를 미대사관 직원숙소와 위락시설로 불법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미국문화원도 무상사용이라는 것이다⁸⁾.

이러한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조항이 행협 제5조 2항이다. 동조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한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주한미군이 이들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보상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정부가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한국이 사유재산소유자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을 대신해서 보상할 의무를 지고 있다. 미군기지가 사유재산인 경우 한국

정부는 징발법⁹⁾에 따라 이 토지를 징발하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 물론 대부분분의 미군기지가 국유지인 만큼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군측에 공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런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토지 징발은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지난한 소유자의 토지를 쌍 보상료로 징발¹⁰⁾하여 부유한 국가의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며,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일 수 있다.

4. 지나친 방위비 부담문제

문제는 이러한 상기 기지의 무상사용에 그치지 않고 주둔비용을 방위비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지이전의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고 1991년에 약속한 것이다. 행정협정 제5조 1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합중국이 부담한다”는 합중국부담의 원칙 조항이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미군당국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87년 당시 19억6백만달러(약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¹¹⁾ 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버렸다. 1991년 2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협정의 유효기간중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 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

9) 징발법(1963년 5월 1일 제정, 1981년 12월 31일 제 5차 개정) 제1조: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예: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정부가 실행하는 보상과 관련하여 여서도 끊임없는 시비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1968년 매향리는 주한미공군의 사격훈련장조성을 위해 500만평의 연안 황금어장과 50만평의 농경지 및 임야를 징발당하여 식가에 훨씬 못미치는 징발보상금을 받아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1968년 징발당시 주민들은 사격장지역으로 편입된 연안어장에서 연평균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당시의 어업권에 대한 징발보상가액은 총액 1,000만원이었고, 농경지는 당시 식가의 1/3정도의 가격으로 징발되었다. 주한미군범죄를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주한미군에 의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유린 실태 보고서)』, 1995.1., pp.49-50 참조.

11) 국방부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지원, 운영유지비지원 등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대해 위의 액수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법과사회연구회(1988), 105면 참조.

6) 서울신문, 1993.4.23.

7) 임제홍,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와 개성방향”,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회, 1994.10, pp.34 참조.

8) 한겨레신문, 93년 7월 22일자 2면 사설 참조.

고”(제1조), “대한민국은 매 회계년도마다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하도록”(제2조)하고 있다. 이 협정은 행정 협정 제 5조 1항에 모순되며, 행협의 改惡이다.

이 개악된 특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지원비용이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이 높다.

더구나 한국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조차 방위비분담금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¹²⁾. 그런데 미국은 당해년도 예산에서 미.공유지 임차료를 지불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5년 국정감사에서 주한 미군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뜻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1995년 9월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95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 미군 방위 분담금은 3억달러로 지난 91년의 1억5천만달러에 비해 4년만에 2배로 늘어났다. 지난 91년 1월 25일 한국은 미국과 미군의 주둔비용 가운데 미군 현역과 군속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시설 및 차재 대금 등 원화 지출경비(WBC)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했었다. 91년 당시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의 16.4%를 부담하고 있던 한국은 미국과 향후 5개년간 WBC의 3분의 1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증액키로 합의했었다. 그 후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 분담금은 92년 1억8천만달러, 93년 2억2천만달러, 94년 2억6천만달러로 해마다 20% 가량 증가해, 올해 분담금은 전체 WBC의 32.2%에 이르는 3억 달러로, 이는 한국 국방비의 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93년의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총지원비용은 기지이전비, 카투사 등 인력 및 군수지원비 및 부동산의 무상지원(토지 7천3백68만평, 건물 1억1백67만평) 등까지 합치면 실제는 10배가 넘는 92년 25억4천만 달러, 93년 24억1천만달러나 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78% 가량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25억 달러, 독일의 9억달러에 비해 예산상 지출은 적은 것처럼 보이나, 우리보다 경제력이 16배인 일본의 76%, 독일의 33% 및 나토회원국의 25%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세계 최고치에 해당되는 것이다¹³⁾.

이미 95년 6월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책검토회의(PRS)에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자국의 국방예산 감축과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유로 매년 10%씩 오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올해 방위분담금인 미화 3억달러의 2배에 달하는 6억달러수준으로 올려

주도록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원화로 지급되는 인건비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는 91년 특별협정 제1조에서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경비의 일부 부담” 합의와도 크게 모순된다. 미측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 91년도 기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 8억4천만달러의 약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공하는 부동산무상임대 및 인력지원 등을 감안할 때, 지금도 실질적인 지원비용이 세계 최고치인데, 이것은 우리한테 지난친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전액수에 불가상승정도를 감안하는 선에서 인상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주한미군방위비 분담산정에는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역할의 변화이다. 주한미군이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순수한 한국방위만의 이해를 넘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적 이해를 위해 주둔한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탈냉전후 주요한 세계 무기시장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는 미국군수재벌의 압력으로 미국이 결코 물러서기 어려운 시장이다. 실제로 미국은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민의 정서에 맞지않게 북한 핵긴장분위기를 이용하여 한국에 판매했고, 게다가 낡은 무기조차 한국에 처분하곤 했다. 둘째, 방위비 산정은 주둔국의 구체적 경제력을 감안해야한다. 경제력이 한국의 16배가 큰 일본, 독일과 단순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주둔 방위비요구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자국의 국방비는 감축하면서 그 부담을 한국에 떠 넘기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 셋째,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그동안 한국인은 민형사상 중대한 인권침해 및 재산권침해를 감수해온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은 형사문제, 민사청구, 노무, 조세, 관세, 통관, 시설, 구역사용에서 지난친 특혜를 입어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 주한미군방위비분담 협상을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무역역조, 경수로지원 등 전반적인 한미관계와 연계하면서 한국정부가 사실상 주한미군에 지원하고 있는 부동산 무상지원을 비롯, 카투사 등 각종 인력지원비, 면세혜택 등 제반 간접지원경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방위비분담금의 산출방식을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방위비 특별협정에서는 NATO 독일 보충협정 제63조와 같이 한·미 양정부의 부담경비를 세밀히 구분, 규정하는것이 미국의 자의적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는데 유익할것이다. 또 이 주한미군 방위비 특별협정은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비준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것이다¹⁴⁾.

12) 강명길, “미군시설 및 기지사용문제와 개선방향”,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 발표문, 외교안보연구원, 1995.6.21. 참조.

13) 조선일보, 주한미군 50년 연재 11, 1995년 12월 9일, p.9 참조.

14) 이장희, “주한미군 지원비용 지나치게 많다”, 한겨레 더불어 생각하며, 1995년 10월 1일, p.1 참조.

5. 원상회복 반환의 문제(제 4 조)

토지의 반환은 온전한 상태로 또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전환시킬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채환경오염이 심하다던가 매향리¹⁵⁾처럼 폭격장소로 사용된 기지의 경우에는 반환받아도 토지로 사용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듈다.

통일후 독일은 소련으로부터 일부기지를 반환받았으나, 오염이 심해 활용이 심하다는 보도가 있었다.¹⁶⁾ 그러나 행협 제4조 1항은 미군측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제4조 2항은 대한민국정부의, 반환된 시설과 구역과 관련, 합중국당국에 대한 보상 의무의 면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상을 산출, 계량하기가 복잡하며, 이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쌍방간에 상호면제를 규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에서 나온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최근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¹⁷⁾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며, 특별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15) 1968년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는 주한미공군의 사격장으로 정벌되었다.

16) 구 동독 Makdeburg에 소련군 주둔기지는 통일후 1990년 9월 소련군 철수후에 이 기지의 땅은 오염이 심해 더이상 토지로서 기능을 회복이 불가능하였다.

17) 우리나라에서는 94년 3월 2일 국회 보사위에서 민주당 양문희 의원에 의해 정부기관 조사로는 처음으로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오염 실태가 밝혀져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연구원이 93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6,044 평), 경북 포항의 캠프 리비(16만평), 대전 대덕구의 캠프 에임즈(119만평) 등 3곳의 미군 철수 지역내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보고서는 토양 및 지하수(지하수는 채수관정이 있는 캠프 에임즈만 조사) 중 유류, 카드뮴, 납, pH 등의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프리비의 토양오염도는 납의 경우 최고 143ppm으로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일반지역의 오염도보다 24배나 높고, 카드뮴도 최고 1ppm으로 일반지역보다 7배나 심하게 오염돼 있었으며 기지 근처 벼의 자람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 리비는 땅 속 깊은 곳까지 유류로 오염돼 있었고, 근처 농경지에도 기름띠 혼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곳은 37개(개당 저장용량 31만 갤런)의 유류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조선에서 공급받은 유류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통해 각지의 주한미군기지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다. 또 캠프 에임즈는 일반지역보다 납의 오염도가 최고 6.1배나 높았고, 캠프 이즈벨은 납과 카드뮴의 오염도가 일반지역보다 각각 최고 9.5배와 4.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표2 > 이들 지역은 50년대부터 미군이 주둔하다가 9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철수한 유류저장시설로 유류에 함유된 납 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하 저장시설에서도 유류가 유출된 것으로 보여 이들 시설로부터 유류가 장기간 누출 될 경우 오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은 이 보고서가 처음은 아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이근행(환경운동연합), 미군기지와 환경문제 참조.

6. 시설과 구역 반환 절차상의 문제 (제2조 4항)

기지를 반환받는 절차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행협 제2조 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와 합중국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은 불가능해진다. 반환여부는 미군당국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또 행협 제 2조 3항은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없게 된때에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하여, 합중국에 일단 제공된 시설과 구역은 그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반환되도록 되어 있는바, 그러한 필요성의 판단에 있어서의 주체가 문제가 된다.

외무부측 견해에 의하면, 합중국측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제공국인 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경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그 사용의 필요성여부를 사용국인 미국측의 결정에 일임한것이며, 이경우 미국은 가급적 반환한다는 전제하에 계속검토하여 시설 및 구역 사용의 필요성을 견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법조문상 이러한 의무부과는 강제적이 아니며, 그 반환 여부가 전적으로 미군당국의 의사에 의존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둔군지위협정이 주둔군의 역할 및 임무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기본취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감정상 합중국당국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것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1991년 한미행정협정 개정양해사항¹⁹⁾은 제2조 제1항(나) 및 제3항²⁰⁾에서 상기의 우려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상기 필요성 판단문제에 있어서 미국측의 선의에 의존하는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²¹⁾.

18) 외무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해설』, 1972, p.16 참조.

19) 1991년 2월 1일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본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교환문서와 양해사항을 하나로 묶었다. 그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및 구역과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이며, 편의상 개정 양해사항이라고 한다.

20) 개정양해사항 제2조 제1항 (나) 1 및 제 3항 1,2 참조.

현 규정에는 어느쪽이 시설과 구역을 계속사용하는 필요성을 판단하는지에 관하여 불분명하다. 외무부에서는 제2조 3항의 문리해석상 미군측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영토 고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 유무는 주둔군대 당국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미군기지가 이전할 때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미일 협정²²⁾의 경우,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under such conditions as may be agreed through the Joint Community)”라는 구절이 없을 뿐 행정협정 제 2조 3항과 동일하다. 따라서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미일 협정은 이러한 반환의 전제조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여된 시설과 구역이 협정의 목적 수행상 불필요하게 된 경우, 무조건적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어 좀더 합리적이다.

NATO 협정²³⁾ “연합군사령부의 사용을 위하여 접수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건물 및 고정시설로서 동 사령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접수국에 반환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무조건적으로’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보충협정²⁴⁾도 “... 그 이외에도 군대 및 군속은 독일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들의 소요량을 검토해야 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수한 협정에 대하여 구애됨이 없이 필요성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군대 및 군속의 수요를 충족할 다른 시설이 대치된 때에는 그 시설은 독일당국에 대하여 사전통고를 행한 후에 지체없이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 독일 보충협정²⁵⁾은 “전기 a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독일당국이 공동방위임무를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독일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1) 이와 관련, ‘부천시 오정동에 주둔했던 미44공병대대의 사례’에서도 상기 규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잘 보여준다.

즉, 부천시 오정동에 주둔했던 미 44공병대대는 1954년 7월 오정동에 처음 주둔한 이래 38년간 주둔해오다가 1992년 9월 30일 파주군 봉천동 일대로 이전을 마쳤다. 인구밀도가 높고, 주거공간이 부족한 부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미 44공병대대 부지는 부대의 이전과 함께 시민생활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방부관계자의 말대로 ‘미44공병대대 부지 13만평의 사용권은 부대 이전과 관계없이 여전히 미44공병대대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군이 스스로 반환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44공병대대 부지 13만평은 미군의 사용권 주장 때문에 부대가 입전한지 2년이 넘도록 현재 방치되어 있다. 더군다나 미군측은 서울 용산 일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폐복과 음식물 찌꺼기 등 각종 쓰레기 처리를 용역업체인 경남기업에게 하청을 주면서 미44공병대대 부지를 분리 수거 및 쓰레기 소각장소로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사고 있다. 주한미군 범죄 극복을 위한 운동본부 외,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유린에 관한 보고, 1995년 1월, p.45 참조.

22) 미일 행정협정 제2조 3항 참조.

23) NATO 협정 제9조 (b) 전단.

24) 독일 보충협정 제 48조 5항 참조.

25) 독일 보충협정 제 48조 5항 b 참조.

특수시설의 사용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제국의 협정들도 한미행정협정처럼 시설 및 구역의 필요성 판단여부는 파견국가에 있음을 유사하다. 그러나 반환하는데 전제조건이 없고 즉시 반환하며, 접수국의 입장은 비교적 많이 고려한다는 점이 한미행협보다 좀 더 진일보한 면이다.

그리고 시설과 구역의 일시적 불사용 및 잠정적 반환과 관련하여, 한미행협²⁶⁾은 잠정적 반환요건으로 시설과 구역의 일시적 불사용 사실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에의 통고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일 협정²⁷⁾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기 잠정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7. 시설과 구역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 (제 3조)

기지사용의 동의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미군의 기지사용은 미군주둔의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방위조약이나 행협에는 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다. 따라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나 활동범위를 확정하기 힘들고, 또한 주한미군의 활동에 대한 통제, 주한미군의 보유무기 여부에 대한 통제권이 한국측에 없고 미국측에 일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²⁸⁾

방위조약 전문에 의하면,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로 되어 있다. 이것은

26) 한미행정 협정 제2조 4항 (a) :

27) 미일 협정 제2조 4항(a) 참조.

28) 미일안보조약의 경우 “조약국은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또 일본의 안전 또는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나 한쪽 조약국의 요청에 의하여 협의한다”고 명문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6조(미군주둔에 관한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각서’에서 “일본의 안전과 극동평화·안전유지를 위해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의 주요한 변경 및 일본 국내의 시설, 구역의 기지화는 일본정부와 상호협의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주둔 미군은 일본정부의 동의 없이 핵무기를 갖추질 못하며, 일본이 반대하면 작전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출동할 수 없다고 한다. 법과사회연구회(1988), 51면 참조.

미군의 활동범위가 한반도지역을 넘어 태평양이 된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억지수단을 넘어서 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Pax Americana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되고 있다 는 점이며, 이럴 경우 주한미군 및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한국측의 통제력은 상당히 감소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방위조약 제2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협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하여,²⁹⁾ 평상시에 미국은 한국의 제재없이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한국과의 협의 없이도 군사훈련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한국측의 동의없이 어떠한 무기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미국의 판단에 입각할 때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면.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핵무기의 보유여부일 것이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보유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무력침략만큼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의 보유 및 사용이 한국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당국의 사용결정권하에 있다면 한국민의 의사보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가공할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³⁰⁾

그런데 현재의 행협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항은 없고 오히려 전도된 조항을 보게된다. 즉 행협 제3조 1항을 보면,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군기지의 보안을 위한 조치를 미군당국은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비해, 한국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³¹⁾³²⁾ 반면 미군의 군사행동이나 핵무기 등 보유에 대해

29) 영어로 보면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further its purpose이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협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당사국은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30) 임재홍,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와 개정방향”,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미행정협정 공청회자료집,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4년 10월, pp.36-37 참조.

31) 이러한 의무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이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건축을 할 때에는 미군당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규율을 할 수 있는 조항은 방위조약, 행협 기타 부속문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즉 현행 행협은 보안조치(Security Measures)를 1) 시설과 구역내에 있어서의 보안조치, 2) 시설과 구역외에 있어서의 보안조치, 3) 비상시 시설과 구역에 있어서의 보안조치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협정 제3조 1항에서 대한민국정부는 시설과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내부조치에 관해서는 간여할수 없다³³⁾. 한편 협정은 “대한민국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前記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정부의 합중국당국의 시설과 구역외의 보안조치에 대한 협조의무 및 합중국당국의 시설과 구역외의 보안조치 등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다. 상기 시설과 구역내에 있어서의 보안조치는 자체적 성격상 당연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영역에 이르는 지역의 ‘시설과 구역외에 있어서의 보안조치’까지 합중국당국에 인정한것³⁴⁾은 비록 그러한 인정이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라는 절차상의 제한에 구속된다하더라도 이는 지나치다고 볼수 있다. 상기 1), 2)는 평시의 보안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3)은 비상시 보안조치를 다룬다. 행협 합의의사록 제3조는

32) 이러한 조항외에 AFKN도 문제라 할 것이다. 행협 제3조 2항 (나) (다)를 보면, “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 정부의 저정 통신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관계 법령과 협정의 범위내에서, 전자파 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장치, 또는 합중국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주한미군 및 그 군속 등 4만명을 위한 AFKN방송이 4천만명이 보는 우리나라의 어느 텔레비전방송보다도 좋은 VHF 채널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이 AFKN방송을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차지하고 있다. 행협개정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논리상 자세히 나루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강성철(1988), 주한미군, 일송정, 123면 참조.

33) 최근 동두천 미 2사단 산불 참사도 이 행협규정에서 비롯된다. 지난 4월 23일 동두천 미군훈련장에서 발생한 산불로 7명의 한국 젊은이가 운명을 달리했다. 미군들이 전투연습중에 쏘이올린

연막탄 유단이 산불의 원인이 되어 애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잊어간 것이다. 이번사건은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땅의 관리·감독권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다. 동아일보, 1996년 4월 25일 참조.

34) 사례: 최근 동두천시 광암동 소재 캠프 호비 탄약고 인접된 지역에 동두천시의 전축물허가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동두천시에 공한을 보내 동 건축이 행협 제 3조와 5조에 근거,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있다. 국방부 공한(1996.4.23) 및 주한미군사령부 공한(1996.3.28) 참조.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합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비상시 합동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거치기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평시와는 달리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보안조치를 행할 권한을 합중국당국에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상황이 비상시인지 또 누가 판단하는 지가 문제이므로 이는 매우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1990.6.25)의 평가

현재 한미양국은 지난 1990년에 상기 각서를 통해 1996년 말까지 용산기지이전을 약속해 놓고, 이전비용문제로 기지이전은 난항에 빠져 있다. 김영삼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합의각서는 방침규정이며, 위반시에 이것을 강제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양쪽 정부는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 더구나 기지를 포함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이전을 포함한 반환문제의 결정권을 미군당국에 부여하고 있는 행정협정이 미국의 재량권을 넓혀주고 있다. 더구나 상기 각서에서 “기지이전은 96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되 앞으로 주한미군사령부의 규모변화에 따라 일정 및 규모조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 규정도 미군당국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주고 있다. 향후 기지각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담아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기지이전 일정을 넘기는 경우에는 임대기지로 성격 전환을 하게 하여 임대료를 받게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IV. 끝나는 말

한미행정상 시설과 구역의 문제는 미군철수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시설과 구역의 문제는 환경보호의 문제요, 국민의 사유재산권침해의 문제

이며, 크게 보면 민족주권의 회복문제이다. 이제 이문제를 더이상 색깔론적 시각에서 치부해서는 안된다. 국토가 좁고 교통이 복잡한 우리나라 도심의 한가운데 대부분의 미군기지가 있다는 것은 도시발전상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으로도 이제 더이상 용납할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뜻 있는 시민 단체들은 미군기지의 이전 및 공여지반환을 시민운동의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되찾기운동과 미군공여지 반환운동도 이러한 택락에서 시민들의 절대적 공감을 얻고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한국군 소유 훈련장, 부두, 공군기지 등 시설을 사용하면서도 시설의 운영유지비를 면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본과는 달리 미국의 방위비 분담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군시설과 구역에 문제의 근본적 시정은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996년 3월 20~21일 와싱턴에서 제6차 마지막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식협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협의된 안은 행협의 근본적 개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 하나의 예가 미군기지의 반환문제와 미군 공여지 반환문제이다. 그런데 지난 3월 한미행협 협상 타결내용에는 이렇게 중요한 시설 및 구역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것은 한미행정협정 협상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행협협상에서의 주요 타결내용은 여론의 표적이 되었던 미군범죄피의자 신병인도 싫점으로 종전의 최종 재판 완료 후에서 기소後로 그리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인 경우 기소前에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형사관할권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 동안 이번 행정협정 6차까지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미양국의 협상태도에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우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아직도 과거의 패권주의적 시각에서 보기때문에 불평등한 조약에 대한 성실한 개정의지가 부족했다. 특히 미국 당국은 그들의 기득권 방어에 철저했다. 한 예로 미국측은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상소하지 않는 경우, 한국검찰측 상소를 금지한 조항(22조 9항)에 대해 자국의 법제도를 이유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또 미군 피의자 심문시 미군관리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심문조서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규정의 개정도 미국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우리사법권을 불신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태도 역시 냉전적 시각에서 우리 국민의 권리보호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사고패턴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그래서 쌍방은 협정의 여타 불평등한 주요문제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행협의 빙산의 일각인 피의자신병 인도 범죄의 범위문제로 성사없는 평행선만 그었다. 특히 언론이 선거 정국에 혼이 빠진사이 협정협상은 마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행협 개정이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형사관할권 행사(제22조)의 몇몇 조항의 부분 개정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이 차제에 정부는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하여 미군기지의 성격을 임대지로 전환하는 등 행협전반에 걸쳐 불평등조항을 개정하는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국민에게 밝히고, 그것을 미국측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5대 새국회는 외무통일위원회내 '행협 전면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구성'이나 아니면 이와 별도로 국회내 '행협개정특별위원회구성'을 즉시 결의해야 할것이다. 지난 95년 10월 일본 오끼나와 미군기지 일부 반환에서 오끼나와 현(縣) 의원들이 자국민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보여준 결연한 의지를 우리 국회도 본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하나 한미행정협정은 미일협정이나 독일보충협정과는 평면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일본과 독일은 패전국으로 전승국인 미군이 일방적 요구가 떠혀들어가는 상황에서 맺어진 협정이다. 그러므로 한미협정은 상기 협정들과는 명백히 구별되며 접수국과 파견국의 상호성의 바탕위에 기초해야 한다. 따라서 미일협정과 독일보충협정을 이유로 한미행정협정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수긍할수가 없다. 그런데도 미일협정과 독일보충협정이 시설 및 구역과 관련하여 한미행정협정보다 접수국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미관계는 과거 같이 일방적 특혜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자 관계이며 또 그렇게 발전되어 가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의 세계화는 과거 제국주의시대,냉전시대에 그리고 정부의 정통성이 없는 시대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의 개정작업에서 출발해야 할것이다.

제 1 장 미군기지 추방운동을 위한 몇가지 검토

1. 변혁운동과 미군기지 추방운동에 대해서

모든 사회변혁운동은 민중의 자주적 요구에 의해 일어나고 자각된 민중의 창조적 힘에 의해 실현된다. 더욱이 세계 제국주의의 핵심인 미국을 상대로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옹호하려는 민족해방운동은 각계각층 민중들의 대중적인 참여와 단결을 통해서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1) 이제 화살의 방향은 분명하다.

한국전쟁을 치른 후 새롭게 출발된 우리의 변혁운동은 엄혹한 시련을 극복하면서 이승만 정권과 유신독재를 무너뜨렸으며, 광주항쟁을 통해 미국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해 갔다. 또한 광범위한 대중들이 참여한 6월항쟁을 거치면서 직선개헌 실현과 여소야대 정국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운동은 남한정권의 배후에 있는 미국을 몰아내는 데 화살을 집중시키지 못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안아오지 못했다.

우리 민중은 이 과정을 통해 남한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해야만 민중의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고 민중의 자주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진리로 깨닫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새롭게 불붙기 시작한 반미자주화투쟁은 초기에는 점거, 방화, 분신 등 극한투쟁을 전개하면서 수십년 동안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로 강요당해 왔던 영원한 혈맹, 미국의 성역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청년학생과 진보적 지식인 사이에서 확산되던 반미자주의식은 1984년 이후 점차로 고양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경제침략의 의도가 노골화되면서 쇠고

기, 양담배, 자본, 금융시장 등의 개방을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는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민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미국놈은 물러가라!”하고 외치고, 남한에 진출한 미국기업에서 자주적인 노동운동이 불붙는 등 생존권적 반미투쟁으로 발전했다. 또한 1988년 올림픽 때 보였듯이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거세어져, 심지어 여고생들이 “우라는 미국을 싫어한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서는 등 반미무풍지대였던 남한이 반미폭풍지대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군사독재정권은 구시대적 안보논리로 국민을 호도하는 데 혈안이 되어 “미군철수 운운하는 자는 민족의 반역자다”라는 등 조금이라도 민족의 주를 강조하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목을 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면서 변혁의 발걸음을 늦추려고 하지만, 민족자주의 함성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반미자주화투쟁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민중의 운명을 좌우할 1992 - 1993년의 격변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민중의 앞길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격변기의 투쟁이 단순한 반파쇼투쟁이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뿐만 아니라 반미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 대중과 함께 손을 잡고 내달리자

기존의 반미자주화운동은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도적 투쟁과 추상적 선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 아직은 반미자주화운동이 대중과 함께 손을 잡고 내달리는 대중전이 되지 못하고, 미국의 헤아릴 수 없는 만행과 침략적 본질이 구체성을 잃은 채 추상적인 선전과 단편적인 구호로 가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반미자주화투쟁이 장기적 관점을 가지 고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시기별, 사안별로 분산적으로 전개되었다. 즉 대중적 토대에 근거한 창조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변혁의 과제속에서 배합, 배치되는 전술적 수준에 머물렀다.

이제 반미자주화운동은 대중속에서, 대중을 각성시키며, 보다 많은 대중을 투쟁으로 인입하여 투쟁의 주체로 서게 하고, 보다 큰 투쟁을 마련해 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지배의 본질과 구체적 죄상, 간교한 음모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분명한 투쟁방향과 대중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대중투쟁으

로 나가야 한다. 나아가 각계 각층의 반미조직을 형성하고, 기존 조직도 반미자주화를 자기 임무로 받아 안도록 교양, 설득하며, 대중의 상태와 우리의 역량을 감안하여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투쟁과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3) 미군기지 추방운동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이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는 정치, 군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정치, 군사적 측면이요, 물리적 기반은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와 주둔군이다.

우리가 반미자주화운동을 전개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바로 미국의 물리적 기반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가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주적인 교류와 함께 평화군축 운동이 필수적이다. 이 투쟁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의 물리적 기반인 군사지배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동시에 현재 한반도 주변의 변화된 정세, 즉 화해의 조류를 우리가 주동적으로 활용하여 조국통일의 선결과제인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시키고, 미국의 분단 고착화와 영구 지배음모를 결정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되는 운동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군축 운동의 핵심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핵무기 철거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팀스피리트 훈련중지이다.

민족민주세력의 평화군축운동이 소극적인 양상으로 전개된 것에 비해 매향리, 모슬포, 군산, 대전, 평택 등지의 기지주변 민중이 벌인 미군기지 반대투쟁은 그 치열성이나 투쟁력에 있어서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례없는 모범을 보여주며, 평화군축운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반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는 침략적 군사지배의 압축된 실체이며, 식민지 지배를 위한 물리적 거점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저장, 유통하는 본거지이며, 식민지 남한의 압축된 상징이고, 미국의 한반도 군사강점의 구체적 현장이다.

또한 미군기지는 기지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을 억압하고 생존을 위협하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치고 반미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은 반미자주화투쟁의生生한 현장이다.

우리가 이러한 투쟁의 현장을 떠나서 책속에서 미국의 실체를 찾고 입으로만

반미자주화를 떠든다면, 이는 한갓 공염불에 불과하며 미국의 침략적 지배에 허덕이는 구체적 민중의 한맺힌 삶을 외면하는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지금 미군기지 추방 및 반대운동은 미군기지 주변에 있는 지역민중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투쟁으로 방방곡곡에서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미군기지 추방 운동은 우리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의 삶을 찾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자주·민주·통일운동이다.

2. 부산 미군기지 추방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최근 부산에서는 수영 비행장의 이전문제가 거론되는가 하면, 시내 곳곳의 군사시설 이전문제가 수개월째 신문 사회면을 들락거리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지상 최대의 명분으로 수십년간 빼앗겨 왔던 땅을 시민생활, 특히 택지 조성을 위해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온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른바, 민주권리의식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 미군기지의 추방문제 역시 그런 차원에서 한두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인근 주민들은 “언젠가는…”하며 기대에 찬 눈길을 하야리아로 던지고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 추방문제를 ‘땅’만의 문제로 단정지어 이것을 ‘시민들이 잃어버린 땅을 찾는 권리요구투쟁을 벌이는 운동’으로 한정짓는 것은 마치 사리돈 한 알로 암을 치료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다.

(1) 부산 시민의 민족자주성을 고양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

‘땅’만을 문제삼는다 하더라도 왜 그 땅을 뺏았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되찾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은 바로 ‘안보논리’로 장식된 미국과 예속정권의 전략과 의도를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

즉, 미군기지 추방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땅에 대한 권리의식을 일깨워 땅을 되찾겠다는 욕구를 갖도록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미군이 왜 부산에 있는지,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이익과 폐해 또는 위협이 있는지, 나아가 계속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몰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

의 정치군사적(?)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실천의 문제이다.

일상생활속에서 시민들이 이토록 어려운 정치군사적(?) 선택을 하게 될 때, 이제껏 그 판단근거의 한쪽은 분명히 미국과 예속정권이 세뇌시켜 왔던 안보논리일 텐데, 또 다른 한쪽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인근 주민이나 땅의 혜택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시민들의 욕구는 되찾을 땅이 주는 혜택이나 미군기지 추방으로 인한 땅값 상승일 것이고, 일반 시민들도 그 점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욕구와 관심이 수십년 묵은 안보논리와 미국과 예속정권의 현실적 힘에 맞서 미군기지 추방을 위해 투쟁에 떨쳐 일어설 실천적 의지를 갖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미군기지 반대투쟁을 해왔던 지역의 실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제주도 모슬포 송악산 미 공군기지설치 반대투쟁의 경우를 보면 주민들은 처음에 땅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반대투쟁에 나선 단체와 개인 등 투쟁주체들은 깊은 논의 끝에 “송악산 미군기지가 모슬포 주민의 생존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홍보사업 등 이후의 사업에서도 줄기차게 이 점에 촉점을 맞추었다.

이에 행정관리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기지는 불가피하며, 피해방지와 보상을 위해 협의를 하자”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금전적 회유와 협박을 계속 시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대책위원회에서도 투쟁방향을 단순한 보상이나 주민 생존권 차원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분명히 ‘미군 핵 공군기지설치 결사반대’로 맞추고 민족자존의 문제를 강조했으며, 주민들은 집회를 통해 “미군 기지는 물 맑고 공기 좋은 록키산맥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매향리 주민들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1차적 관심이나 행정관리의 회유의 촉점은 땅과 그 보상의 문제였다.

하지만 투쟁주체들의 변하지 않는 내용은 분명 민족자존의 문제였다. 매향리 투쟁의 영웅적 주역이었던 전만규씨는 법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자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후진술에 임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 있다면, 이 분통스럽도록 억울한 촌놈이 아니라, 그 야만적인 미군놈들을 당장에 구속하라. 이땅이 뉘 땅인데 미국놈들이 나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악질적인 행패를 부린단 말인가?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전투기 폭격장

이 필요한 것이라면,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고수부지에다가 타켓을 설치하고, 청와대에서 미 대사관과 국방부 청사지붕을 타고다니며 폭격훈련을 해보라”고 호통 치면서 “이 사건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이자 민족자존이 걸린 사건이므로 재판장은 미군과 권력의 편이 아닌, 우리 민중의 편에 서서 심판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산 해미의 경우, 초기에는 주민들이 국민학생까지 집단적으로 학교를 빠지고 집회에 참가할 정도로 미군기지설치 반대투쟁에 나섰으나, 군 당국과 행정 관리들이 지역 유치들을 회유하여 땅과 그 피해보상의 문제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데 성공하여 반대투쟁을 무마시킨 바도 있다.

각 지역 투쟁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미군기지 추방운동의 본질적 힘은 단순히 땅에 대한 욕구나 권리의식보다는 민족적 각성과 민족자주성이다. 우리가 부산에서 미국과 예속정권의 끊임없는 안보논리를 뚫고 미군기지를 추방할 수 있는 힘과 그 방도는, 하야리아 부대와 제8부두만 돌려받으면 부산의 주택문제나 항만문제가 해결되고 서민들이 당장 짐장만이 될 것 같은 환상을 불어 넣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의 땅을 이민족에게 빼앗기고 그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민족적 울분이요, 민족의 주인으로서 의지를 북돋우고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군기지 추방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문제는 시민대중의 민족자주성 고양과 민족의 주인으로서 각성을 높여가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을 구체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생활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생존의 심각한 위협요소로 되고 있는 지역내의 미군기지를 추방하는 운동은 시민대중의 관심과 공감, 그리고 참여속에 민족자주의식을 확산, 고양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민족자주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고양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중의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고 민중의 자주위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조국통일 촉진운동의 큰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조국통일 촉진투쟁의 불길이 갈수록 더 높게 치솟고, 대외정세가 이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전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주교류 확대와 함께 조국통일 촉진투쟁의 두 축 가운데 하나가 정치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평화군축운동이다. 한반

도에서의 평화군축운동은 외국군 철수와 핵무기 철거가 그 핵심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군 철수와 핵무기 철거는 구호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선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의 미군기지와 핵무기의 위협을 지역대중의 힘으로 추방하는 투쟁은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부산은 미군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이다. 부산 주둔 미군기지가 다른 지역 기지에 비해 주둔 병력수나 군장비 시설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전략적 위상을 낮추어 보아서는 안된다.

부산 주둔 미군기지 가운데 8부두와 미 제55보급창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미군전용 항만시설로, 그 규모나 활용도에 있어 주한미군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곳으로 지목되는 곳이다. 이곳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보급물자를 들여오는 창구이며, 한반도에 배치될 핵무기의 반입경로로도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팀스피리트 훈련 기간중에는 전쟁물자 및 병력의 주 상륙지로 이용되고, 유사시에 미 제7함대의 주요 작전지역의 하나로서 미국의 동북아 해군 작전수행을 위한 전초기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장산의 레이다 기지는 미군의 동북아 핵통신시설의 중계시설이다. 이곳은 일본과 한반도의 핵통신시설을 이어주는 중계지로서 미국의 핵전쟁 수행을 위한 신경 조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해의 미군 항공기 정비기지도 동북아 전역의 미공군 항공기가 정비를 받는 곳으로 그 전략적 의의가 큰 곳이다.

이들 부산지역 주둔 미군기지와 시설의 관리업무가 하야리아 부대에서 이루어 진다. 1천여명의 병력이 17만평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수영장과 블링장 등 온갖 위락시설을 갖추고 있는 하야리아 부대는 유사시에 미군 작전수행상의 배후근거지로서의 활용도를 갖고 있다.

이렇듯 부산 주둔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의 존립에 없어서는 안될 최후의 보루이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상 그 전략적 위상이 높은 요충지이다. 만약 미국이 8부두와 제55보급창을 잊게 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며, 핵무기와 핵장비를 비롯한 군수물자의 반입에도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 주둔 미군기지의 추방은 주한미군의 존재와 핵무기 보급의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것으로써,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거의 현실적 방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 평화군축을 통해 조국통일을 촉진하

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3) 부산지역 주민운동의 또 다른 출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운동은 지역주민의 생활적 이해에 기초한 권리요구이기 때문에 추방운동의 조직적 추진을 통해 부산지역 주민운동의 또 다른 출발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전국 차원의 투쟁과 사업, 논의, 논쟁에 치우쳐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으로부터 구체적 투쟁을 추동하는 데 부족하였고, 1990년 반송지역 쓰레기 매립장 반대시위 때와 같은 주민들의 자발적 투쟁에도 외면 아닌 외면을 해왔다.

이제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서 이 운동을 대중적 지역주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30년만의 지자제가 실시된 1991년을 맞아 우리는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으로 찾아 들어가 주민의 생활현장으로부터 민주화와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고 변혁의 씨앗을 심어가야 한다.

부산 미군기지 추방운동은, 전국 민주화운동의 일정과 계획에 따라 지역에서 수동적으로 수행하기에 급급한 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의 요구와 힘을 모아 지역현실에 맞는 일정과 계획으로 자주적이고 책임있는(끝장을 보는) 실천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투쟁과정에서 실천적으로 전국 각 지역과 연대하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투쟁의 모범을 창출해나가야 한다. 특히 부산에서 미군기지 추방투쟁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를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방투쟁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에 거센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군기지 반대투쟁은 이전해오는 미군기지에 대한 반대투쟁이 주를 이루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추방투쟁은 매향리 외에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용산기지의 이전 역시 조직적인 추방투쟁의 성과로 보기는 힘들다. 이미 미군기지가 있는 곳에서의 미군기지 추방투쟁은 새롭게 이전해 오는 곳과는 달리 주민들이 미군기지 주둔을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농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미군기지가 이미 지역의 중심축으로 갖가지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등 특수한 결집돌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미군의

만행과 그 존재 자체부터가 주민들의 뿌리깊은 반감을 불러일으켜, 미군을 상대하는 상점 주인들이나 심지어 한국 경찰까지도 반미주의자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뿌리깊은 반감은 있으나 미군기지 주둔을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는가 하는 것은 과제이지, 결코 불가능한 조건은 아니다. 부산지역에서 바로 그 모범을 창출해낸다면, 전국 각 지역주민들을 기지추방운동의 대열속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산과 같이 인구가 집중되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미군기지는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 시민생활과 도시발전에 직접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밀집 공간에서의 자행되는 미군범죄와 AIDS 등은 교육, 환경, 문화 등 시민생활 전면에 치명적 폐해를 끼치고 있다.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낮고 생활적 결합도가 낮은 도시지역 주민운동의 애로를 잘 극복하면서, 이와 같은 도시지역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선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지역 주민의 정치의식, 시민권리의식에 맞게 여러 단체와 조직의 힘을 잘 모은다면, 도시지역 주민운동으로서의 미군기지 추방운동은 분명히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부산과 같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미군기지 추방 운동은 뒤이어 대구, 군산 등 다른 도시지역에서의 미군기지 추방운동을 크게 고무할 것이다.

3. 어떻게 추방운동을 할 것인가?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다”는 말이 있다. 부산 미군기지 추방운동의 주체는 미군기지의 피해자인 시민대중 모두이며, 피해와 위협이 가중되는 만큼 소극적 저항에서 조직적 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1) 먼저 각성한 사람이 의지를 갖고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와 위험을 알려야 하며, 여론화하여 시민들의 추방의지를 모아가야 한다.

부산 미군기지의 피해자는 누구이며, 피해와 억압, 위험의 정도는 어떠한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은 미국의 전략에 의해 핵을 비롯한 전쟁물자의 수송관문과 보급창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핵과 에이즈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국민의 생

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위험과 미군기지의 전략적 위상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곁으로 볼 때 부산시민에게 미군은 몇 명의 군인과 하야리아의 잔디밭, 때때로 나타나는 군함, 몇 건의 미군범죄, 택사스 술집으로만 비춰질 뿐이다.

미군기지 추방운동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와 위험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또한 부산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자는 단순히 인근지역인 연지동과 범전동의 주민만이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이며 나아가 한반도 민중 전체임을 확고히 하고 이를 국민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투쟁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근지역 주민을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만을 추방운동의 주체로 상정해서는 안된다. 추방운동의 주된 방향은 미군기지로 인한 위기감을 당장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일반 시민에게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시민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군기지가 이전해 오는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시민은 아직 미군기지의 부산 주둔에 대해 거부감은 있지만, 즉각적 반발이나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은 아니므로 부산의 미군기지 추방운동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인근 주민들이 도저히 못참겠다고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설 그 어느 때(?)일까?

각성한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주변동료로부터 일반시민에까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와 위험을 알리고 추방의지를 모아가는 일이 지금 바로 시급하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기독교 등 종교인과 청년, 학생, 지역민주 단체 성원들의 문제제기로부터 추방운동이 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에서는 한국기독교협의회(NCC), 기독청년협의회(EYC) 등 기독교계에서 대전에서는 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충민 스티카와 전단, 포스터 부착 등 대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충민의 서명운동, 대전 대학생대표자 협의회의 대전역앞 집회→시민의식으로의 확산을 위해 NCC에서 여러 사회단체에 시민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각 단체별로 대책위를 구성하거나 공동대책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결의→각 단체별로 소위 대책위를 모아 실무대책팀 구성→정의구현사제단, 민교협, 전교조, 병원노조 연합, 연구사노조, 민노협, YMCA, 인의협, 주부 아카데미 협의회, 여민회, 새길 청년회, 언론노조 등 각계의 40개 단체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홍보사업과 함께 시민보고대회, 규탄대회 등을 열어나갔다.

제주 모슬포에서는 대정읍 출신 대학생 모임인 제주대 대정학우회와 지역 청년들이 대책위 결성을 위한 예비모임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운동 제주본부, 제주대 총학생회, 안덕 민주청년회 등 지역단체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반대운동의 추진방향과 추진위 결성을 준비한 후, 마을 이장동 마을 지도자와 주민 규합에 나섰다. 이후 결성된 대책위는 마을별 실행위원회를 두어 가구방문 서명운동, 가두방송, 리별 플랭카드 부착, 연재형식의 대자보를 만들어 마을 순회설명회, 국민에게 편지 보내기, 언론사를 통한 여론확산에 주력했다.

또한 대정학우회는 국민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 드리는 글'을 배포하면서 대학의 총학생회와 협력하여 대학내에 학과, 학년별 대책위 결성을 호소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학과, 학년별 교육을 실시한 끝에 학생대책위 구성을 이루어내어 학생대중과 함께 가가호호 주민방문을 실시하여 반대투쟁 열기를 높였다.

이러한 노력끝에 대책위가 마을 이장들의 동참 속에 8개 리, 22개 리의 대책위로 발전했고, 인접 면인 안덕면 대책위, 제주도민 대책위, 서울대책위로 확대 발전하였다. 또한 군사기지 결사반대 결의대회 때에는 농민들이 모두 일을 쉬고 대회장으로 모이는 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지역주민들이 참가하여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장엄한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평택지역에서는 은행인, 노점상, 대학강사, 대학생 등 먼저 각성한 몇 사람의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운동 준비를 하며 시민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라는 차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미군기지 반대투쟁 전개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민 전체의 힘을 모아 반대운동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동일하다. 또한 대전에서는 단체들의 결합이 돋보인 반면, 일반시민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모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추방운동의 후반기에는 대전지역을 몇 개의 지구로 나누어 대책위에서 동별 지구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중의 참여를 모아 이전저지 이후에도 대중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을 모색하는 등 주민 전체의 힘을 모으려는 노력에 주력했다.

미군기지 추방운동은 몇몇 사회단체들의 결합에 의한 이름뿐인 대책위 활동이 청년학생들의 선도적 투쟁만으로는 바르게 전개될 수 없다. 부산지역의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종교인, 민주인사, 청년학생, 인근주민, 그리고 이 문제를 먼저 각성한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일반시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추방의지를 갖도록 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촉진하면서 그 힘을 모아가야 한다.

· (2) 주변 동료의 힘을 모으고, 적합한 방안을 세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힘과 노력을 바르게 모아나가야 한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신명이 나서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 운동의 의의와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스로 적극적 의지를 갖는 것이 일의 시작이다. 기나긴 논쟁과 간단한 준비, 긴박한 상황과 거부할 수 없는 당위에 따라 억지로 떠미는 식의 인원 차출, 책임성이 약한 대책위, 관성적 사업추진으로는 신명도 나지 않을 뿐더러 힘도 나오지 않는다.

먼저, 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주변 동료나 자신이 속한 단체와 모임, 조직에서부터 적합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제안하고 설명하며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를 모아가야 한다.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모아 독서토론회나 설명회를 연다든지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토론회와 각종 회의를 거쳐 의지를 모아낸다. 그리고 적합한 실천방안을 찾아서 실정에 맞게 자체 활동을 계획하고, 작은 것부터 주변 동료, 가까운 주민들로부터 홍보하며 실천해가야 한다.

기독교계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내용과 방식으로, 불교도는 불교도의 생활로, 학생은 학과, 단대, 써클 등에서 동료학생을 대상으로, 인근지역 청년 학생과 뜻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성계는 여성대중에게 맞는 선전과 사업으로, 노동계는 노동자의 방식과 내용으로, 택시기사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모임과 동료로부터 관심→의지→실천으로 힘을 모아가야 한다.

또한 추진운동의 중심을 세우고 각 개인과 단체, 조직의 힘을 바르게 모아야 한다. 부산 미군기지 추방운동 추진위원회 등 추진운동 주체를 구성할 때에는 그 중심을 바르게 세워 운동의 방향이 흩어지지 않고, 각 조직과 개인의 힘이 바르게 모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단체와 모임, 조직과 개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구성원의 의지를 충분히 드높여 참가 주체를 꾸려야 한다.

이름뿐인 대책위나 추진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름만 걸고 대표자 선에서 만 논의되는 단체나 모임에는 참여하지 말고,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실제로 실천에 임할 구성원의 의지의 결집으로서 참가 주체를 꾸려야 한다.

또한 초기에는 일반시민의 참여폭이 넓을 수 없다 하더라도 추방운동의 조직방향을 시민대중의 참여폭을 넓히는 쪽으로 맞추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 추방운동

을 시민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3) 합법적 방식으로, 대중적 공간을 넓히며, 시민대중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찾아 대중의 역할을 높이자.

미군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은 실로 깊으며 그 폭 또한 넓다. 추방운동이 얼마나 힘있게 추진되느냐는 오로지 시민대중의 개별적, 감정적 반감과 분노를 어떻게 조직하고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 모슬포, 대전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대중적 공간을 만들고, 합법적 투쟁방식을 개발하며, 시민들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전에서는 서명운동, 스티커, 포스터 부착, 에이즈 사진전 등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활동에 이어 '평화주간 설정' 등 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각 단체별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일반시민에 대한 집단교육, 홍보자료 작성, 교육용 슬라이드 제작을 시도했다. 1주일간의 평화주간을 선포하여 강연, 심포지움, 공청회, 문화행사, 평화대행진(투쟁적 분위기보다는 축제 분위기)을 개최하였다. 또한 반핵, 반에이즈, 반매춘을 상징하는 풍선, 우산, 의상, 마스코트 등을 이용한 시위, 풍물패 공연을 기획하고 상징 뗏지 제작(선전, 재정확보 목적), 캠페인 송, 개사곡, 상징 그림 제작, 물품제작 판매사업 등 창의적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 사업계획들은 모두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창의성이 돋보이는 구상들이다.

제주 모슬포에서는 발로 뛰는 선전 교육활동에 이은 대규모 집회, 합법적 공간 활용이 눈에 띈다. 모슬포 마을방송, 차량홍보, 주민방문 홍보, 리별 플래카드 부착, 주민에게 편지보내기, 연재형식의 대자보로 마을 순회설명회 개최, 지역 언론사를 통한 여론확산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발로 뛰어 주민의 관심과 의리를 모으고, 마을 이장을 규합해 갔다. 또한 마을회관과 마을방송을 활용하는 등 합법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 대부분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그 힘과 성과를 홍보하며, 조직을 확대하고, 그 가운데 주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높여가면서 미군기지반대의 열기를 끌어올려 마침내 당국으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아내었다.

미군기지 추방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합법, 대중적 공간을 넓히고 시민대중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개발하는 과제와 아울러 선전, 특히 홍보활동

에 있어서 사회여론화하는 순서와 방법, 각종 홍보매체와 홍보양식 및 내용 검토, 홍보의 대상과 원칙에 대한 분명한 정리, 충분한 연구조사를 통한 홍보자료 확보, 각 단체 홍보 책임자 모임을 통한 방안 모색과 각 단체의 홍보를 통한 문제제기, 언론사의 기획취재 유치 및 신문광고, 간지, 반상회 등 가능한 방안을 활용하는 방식, 홍보물 배포체계 형성 및 지구별 공동책임체제 검토 등 세밀한 연구와 모색, 준비 등이 뒤따라야 하며, 전문역량도 가능한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선전홍보 활동에서는 특히 일반시민이나 노동자 대상의 교육선전자료를 만드는 것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행사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도 창조적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그 행사를 알리면서 추방운동을 선전하고, 행사를 통해 각 성과 의지를 드높여야 한다. 그리고 대중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으며, 행사의 성과를 홍보하여 열기를 확산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주체에 의한 실태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실태 조사과정을 시민홍보와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미군부대, 문화원, 부산시, 국방부 관계자와 주민조직 대표, 전문분야 대표, 각 지역 사례 발표자(필리핀 등 외국사례 발표자도 검토)의 공개토론회를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대중적으로 제안하고, 그 제안 자체를 대중적으로 홍보하며, 공개토론회의 현실적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참가주체가 결정되면, 이를 집회형식으로 전환하여 즉석 4행시 짓기, 노가바 등 시민참여 공간을 만들어 열기를 높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적절한 매체와 형태 및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활동을 벌이면서 비데오와 슬라이드 제작도 적극 검토하여 집단교육과 여론확산에 주력해야 한다.

미군기지 추방운동의 주체가 형성되면, 사업방향을 발표하면서 부산시민 대중에게 '민족자주성 회복운동'을 선언하여

① 부산 주둔 미군기지 추방운동 선언

—민족자주성, 자존심 회복, 지역주민 생활개선, 지역개발, 핵과 에이즈의 위협과 전파 추방

② 미국 문화, 물품 추방운동 선언

—수입 농산물, 양담배, 외국물 추방운동을 시민 생활운동으로 제기

③ 수입개방, 자본시장 개방 등 미국의 경제침략 반대운동 선언

④ 자주적, 평화적 민간 통일운동 선언

—평화군축, 전쟁연습, 통일저해 팀스피리트 반대, 생존위협 핵반대 등을 실정

에 맞게 선전, 홍보

이상의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하여 선전하고, 그 실천적 중심은 부산 미군기지 추방운동에 둔다. 그 열기를 모아가면서 부산시민의 민족자주의식을 고양하는 데 주력할 것을 선언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4) 부산 민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모아 기필코 부산 미군기지를 추방하여 전국적 모범을 창출하자.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미군과 그들의 군사지배를 수수방관하면서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겠다는 구호나 외치고 있어서는 안된다.

반미자주화가 혁명운동의 관건이라고 힘주어 주장하면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미군기지에 대해 몰아낼 구체적 계획을 한 번도 세운 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결의가 얼마나 관념적이고 현실에 뿌리박지 못한 것인가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시급히 미군기지 추방운동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부산 미군기지 추방운동은 당연히 전국 미군기지 반대투쟁과 맥을 같이 하면서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과 논의의 초점은 우리 지역에서 벌여나갈 우리 스스로의 투쟁이다.

전국적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추상적 선전에 그치거나 중앙(?)에 의지하거나, 중앙조직의 방침이 결정되거나, 시류의 대세가 이쪽으로 기울어야 관심을 갖고 수행하느라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우리 지역의 과제를 요구와 의지, 힘을 모아 자주적이고 책임있는 실천으로 전국적 투쟁의 모범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책임있는 투쟁과정에서 지역과 지역이 연대하고, 그 실천이 모여 전국적으로 힘을 발휘하면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 운동은 상당한 정도의 탄압과 위협, 회유가 예상되며 예기치 못한 난관들이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설정과 처지속에서 분명한 뜻을 세우고 끝장을 볼 각오로 역사의 주체인 대중의 힘을 바르게 모아간다면 부산 미군기지는 반드시 추방될 것이다.

미군기지반대투쟁의 의의와 현황

이 일 형*

1. 들어가는 말

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투쟁은 바로 6월 항쟁의 과정에서 깨달은 권리의식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미군기지반대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 만 해도 반미의 무풍지대라고 했던 남한에서 민중 스스로의 힘에 의해 미군기지반대투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그 위용을 과시하면서 성역처럼 군림했던 미군기지가 이제 민중들에 의해 민중생존과 대립하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40년이 넘게 이 땅을 지배해온 냉전논리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자발적인 기지반대투쟁이 전개되기 힘들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미군기지반대투쟁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미군기지반대투쟁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에 미군기지가 산재해 있음에도 그 실태조차 모르고 있으며, 그동안의 미

* 평화연구소 연구원

군기지반대투쟁 또한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땅에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기지반대운동은 일본이나 필리핀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중적 동력을 지니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민족의 자존심을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누구나 조금만 이 땅의 평화를 생각한다면 미군기지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사 상무인 남시욱씨는 “군축, 군축하는데 주한미군 연구라도 제대로 하고 군축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¹⁾고 비아냥거렸지만 그 역시 군축을 위해서라도 기지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군사기지반대투쟁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분명하다. 얼핏 일본과 필리핀의 기지투쟁을 연상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투쟁경험이 부족하고, 더욱이 기지실태에 대해서도 무지하므로 아직은 낯설다. 남한 땅 곳곳에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으나 군사문제에 대한 비밀주의와 조사 활동의 부족으로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특별취재반이 89년과 90년에 ‘주한미군은 어떤 모습으로 왜 이 땅에 주둔해 오고 있는가?’ ‘주한미군은 언제쯤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성실한 답을 얻고자 취재하여 그 결과를 책으로 펴낸 것이 유일한 조사자료일 것이다.²⁾

그러나 여전히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기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미군기지가 오늘날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기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지실태조사는, 72년에 제정된 군사기밀보호법이 20여년 동안 손질 한번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밀탐지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한편 군사기밀보호법을 비롯한 비밀주의는 국민의 알 권리의 억압하고 있으므로 ‘군사기밀탐지’를 하는 정도의 활동이란 현실

1) 동아일보특별취재반, 『철저해부 주한미군』, 6쪽, 동아일보사.

2) 이 책이 동아일보사에서 90년 11월에 펴낸 『철저해부 주한미군』이다.

적으로 불가능하며 실태조사조차도 어렵다. 따라서 기지실태조사를 할 경우 기지의 수, 규모, 역할, 영향, 지역주민과의 관련성 등을 현지답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결합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는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지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뿐더러,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기지반대투쟁의 대중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기지반대투쟁의 결과를 종합하는 것과 앞으로 기지반대투쟁을 위한 문제제기와 기지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한미군기지의 성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1) 주한미군기지의 일반성격

기지는 전쟁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며 병원, 장비와 함께 군대의 기초가 된다. 기지는 작전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용도는 기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본에서는 기지반대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60년대 당시 미군기지를 반혁명의 근거지로 파악했다. 즉 지배계급이 국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도시와 주요 공업지대에 기지를 두고 있으나 사실은 대중운동을 진압하여 혁명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미군기지가 주로 대도시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이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전쟁은 사람을 지키지 않고서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장과 같은 거대한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도시와 주요 공업지

3) 青島章介, 信太忠二 공저, 『基地闘争史』新報新書, 194쪽

4) 일본의 경우 주요 공업도시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기지의 역할은 비상시 산업돌자와 노동인력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대 주변에 기지가 존재한다.⁴⁾
주한미군기지는 미군주둔의 구체적인 실체이다. 그러므로 기지없는 미군의 주둔이란 있을 수 없다. 미국의 남한지배가 군사력을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4만 3천의 주한미군과 120여개의 미군기지가 바로 물리적 기반이 된다.

기지의 용도는 여러가지인데 연습장, 사격장, 훈련소, 항만, 비행장, 통신소, 보급소, 사무소, 교육연구소, 의료시설, 숙사 등으로 다양하다. 또 기지는 육상의 시설을 막론하고 해상연습장, 공군전용공역과 같은 것까지 포함해 육해공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일본에서 기지투쟁은 주로 비행장 근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기지투쟁'하면 비행장을 쉽게 연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남 해미, 제주도 모슬포, 경기도 매향리 등에서 벌어진 군사기지 반대투쟁은 모두 비행장을 둘러싼 문제였다.

각 기지들 사이에는 상호연관성이 있다. 전투기지 가까이에는 사격 폭격장이 필요한 것이 그 예다.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의 쿠니사격장이 아시아에서 두번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이유로 각 기지

(오산, 수원, 군산)간의 지리적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미국관리들의 발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분쟁지역에 개입하는 시간과 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2000년 이후까지도 상당수 주둔할 것이라고 한다.⁵⁾ 칼 포드 미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91년 4월 2일 "태평양 주둔 미군이 이 지역에 전진배치된 이유는 소련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2000년이 지나서까지 상당수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미군기지반대투쟁의 앞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였다.

주한미군기지는 미군이 어떠한 형태의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담보이며,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힘의 상징이 되고 있다. 미군이 이 지역에 전진배치된 이유가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신속배치군으로써의 역할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한반도는 불가

5) 『한겨레신문』, 91년 4월 3일

피하게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 개입하게 되었다. 한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기지를 비롯한 여러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조인되었고 1954년 11월 18일에 정식 발표되었다. 주한미군의 항구적 주둔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4조 60항에서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할 것'을 정치회담을 통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치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휴전협정의 정신과 위배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은 유례없는 불평등조약인데 주한미군의 주둔을 명시하고 있는 4조만 살펴보기로 한다.⁶⁾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육·해·공군을 한반도의 어떠한 곳이나 배치할 수 있고, 주한미군과 무기의 철수·반입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핵 관련 병기와 시설의 배치도 예외는 아니다. 이밖에 미군의 주둔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주둔의 목적이나 책임 한계, 철수 시기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표기가 없다.

이 조항은 1904년에 일본과 체결한 한일의정서와 비슷하다. 한일의정서 4조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한 권리가 일본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일의정서에 따라서 일본

6)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미군기지반대 전국공동대책위원회편, 『양키고홈』, 33~37쪽, 강성철, 『주한미군』, 일송정, 111~125쪽 참고.

군은 용산에 주둔했고, 일본군이 물러나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군이 주둔했던 용산에 미8군사령부가 주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조약의 불평등성은 미일안보조약과 비교하여 볼 경우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미일안보조약의 교환각서에는 ‘일본의 안전과 극동의 평화안전유지를 위해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의 일본배치, 장비의 주요한 변경, 일본 국내의 시설과 구역의 기지화는 일본정부와 사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성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일고 있다. 동아일보사가 펴낸 ‘철저해부 주한미군’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전쟁 막바지에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미국과 그러한 미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 사이에 맺어진 조약’임을 강조하면서 ‘더 동등한 입장에서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⁷⁾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조약으로 기지투쟁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52년 처음 체결된 미일안보조약도 미군점령시대의 유산으로 여러가지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여론의 강력한 반대로 1960년에 개정되었다.⁸⁾ 개정되기 전에는 마치 지금의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미군이 기지사용이나 무기도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미국이 일본 내에서 무기와 군사력의 규모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일본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물론 미국이 일본에서 경우와 같이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완전하게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 현재의 조항이 보기드문 불평등조약임에도 개정을 위한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는 실정에서는 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힘을 모아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7) 동아일보특별취재반, 「철저해부 주한미군」, 동아일보사, 56쪽

8) 이삼성, 「핵의 위기」, 창작과 비평, 90년 겨울호, 382쪽

3) 미군기지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미군기지는 군사적 측면에서 분쟁발생 때에 1차적 공격목표가 된다는 점에서 염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핵기지의 경우 핵미사일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한다. 미국의 전 해군제독이며 현재 국방정보센터 소장인 진 라로크는 84년 일본 요코스카에서 열린 ‘핵도 기지도 없는 아시아 태평양을 위한 반핵평화국제회의’에 보낸 서신에서 “핵무기 배치는 전쟁 시 핵공격을 받는 새로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군사 관점에서 ‘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⁹⁾ 특히나 상대방의 공격에 대하여 보복공격을 가하여 확실한 파괴를 수행하고, 혹은 상대 국가에 먼저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의 공격능력을 파괴한다는 군사교리 때문에 미군기지 주변은 상대방의 공격목표가 되어 미사일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군기지는 지역산업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비생산적 숙박업, 오락시설, 서비스업종이 성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연히 사회계층변화도 나타나는데 한적한 농촌이었던 동두천이 “동두천에 접대여성 1개사단이 주둔한다”는 뉴스가 나돌았을 정도로 자고나면 논밭들이 술집과 창녀촌으로 바뀌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양정자씨는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미군과 국제결혼한 후 실패한 한국의 여성 중에서 미국에서도 위안부의 일종인 맛사지 걸로 다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지촌 국제결혼의 비극을 증언하였다.¹⁰⁾ 결국 미군의 주둔으로 군사적 위협의 잠재성이 한결 심각해졌고 지역 사회구조가 급속하게 훼손되어 공동체의 질서가 크게 왜곡되었다.

미군기지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고용노동자의 고충과 빈번히 발생하는 미군범죄 역시 미군기지가 미치는 부정적 요소이다. 미군부대

9) 표문태 편저, 「아시아를 비핵지대로」, 일월서각, 252쪽

10) 김한일, 「미군사령부가 대전으로 오면, 일어서는 사람들」, 89년 창간호 56쪽에서 재인용

에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의 수는 2만 3천여명이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군사작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노동자의 권리행사는 빈틈없이 차단되어 있다.¹¹⁾ 미군기지 주변에는 미군이 주둔한 아래 미군에 의한 범죄행위가 끊임 날이 없었다. 통계에 의하면, 67년부터 87년까지 범죄행위에 가담한 미군의 수는 하루 평균 15명이 넘어서고 있다.¹²⁾ 강간, 추행, 살인, 살인미수, 폭력, 마약, 사기, 뻬소니, PX부정유출 등 미군은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다.

미군은 이 땅에 40년이 넘게 주둔하면서 우리사회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필요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더구나 미군주둔의 필요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냉전논리를 배경으로 '필요악'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3. 일어서는 사람들—미군기지반대투쟁 평가

1) 미군기지반대투쟁의 의의

미군기지의 정치군사적 성격과 주민생활과의 모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지반대투쟁은 평화운동과 자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다.

86년 김세진·이재호 열사의 선도적 투쟁 이후 '반미의 무풍지대'라는 치욕에서 벗어나 반미자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반미자주화가 운동의 중심적 고리가 되면서 주어진 과제가 바로 '반미운동의

11) 주둔국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17조 5항에는 "조합 또는 기타 고용단체는 그의 목적이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공동이익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고용주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에 가입 또는 불가입이 고용이나 고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제17조 4항에서는 쟁의를 부정하고 있다.

12) 미군기지반대 전국공동대책위원회 편,『양키고향』, 88~92쪽 참고.

대중화'이다. 미국이 남한사회의 모순구조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격화되면서 반미운동은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다. 정치군사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수입개방과 우루파이라운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경제 공세에 대한 민중의 생존권 투쟁 등 반미자주화운동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미군기지반대운동은 자주화운동의 대중적 성장에 불길을 당기는 운동이다. 사회경제 측면에서 대중들의 이해가 결여 있는 기지반대운동이 반미자주화운동의 성장을 한결 높이 이끌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기지반대운동은 모든 대중운동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사회경제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반미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기지반대운동은 전쟁수행을 전제로 존재하는 기지를 반대한다는 1차적인 속성 때문에 평화운동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서 투쟁이 비롯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기지반대 운동과정에서 미군사기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성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지반대운동은 필연적으로 평화운동을 속성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상황에서 기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란 한미간의 군사적 불평등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미군철수와 비핵지대화, 남북한 군축, 평화협정과 불가침선언 채택 등 평화운동의 과제와 결합되면서 기지반대투쟁이 전개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제주도 송악산 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 군산 옥구 미군만행규탄투쟁, 대전 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 등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도 평화운동의 과제가 결합하여 주민들의 단결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2) 민족민주운동의 성장과 함께 발전한 기지반대운동

88년에 진행된 제주도 송악산 군사기지설치반대투쟁에서부터 최근의 평택 미8군기지이전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몇차례 있었던 기지반대투쟁의 배경에는 87년 6월항쟁 이후 억눌림에서 전국민들의 투쟁이 터져나오는 '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민주화운동의 발전은 기

지주변 주민들의 투쟁을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자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의 성장은 기지반대운동의 정당성을 제공한 것이다.

기지반대투쟁은 일반 경제투쟁이나 생존권투쟁과 달리 반공냉전체제 아래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성장이 없었다면 정당성과 자신감을 지닐 수 없었을 것이다.

매향리 미군사기지반대투쟁의 경우, 투쟁의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배포한 글에는 “주민잡는 국방안보 웬말이냐?” “누구를 위한 한미행정협정이기에 타국(일본, 필리핀) 주둔 미공군훈련생들이 내 고향 땅에 와서 폭격 훈련을 한다는 말이냐?”는 주장이 담겨 있다.¹³⁾ 냉전의식이나 반공이데올로기는 절실한 생존의 요구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엄청나게 큰 힘에 대하여 주민들이 주저함없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분명 86년부터 자주화운동의 성과를 배경으로 ‘국가안보는 국민을 위한 안보’라는 각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지반대투쟁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주민의식의 성장에서 ‘안보에 우선한 가치로써 생존권’이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성과는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나 통일이 반공에 우선하는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는 대중적 인식의 전환이 가능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미군기지반대투쟁이 6월항쟁 이후에 집중된 것에서 기지반대운동이 6월항쟁에 고무받은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¹⁴⁾ 매향리투쟁이나 서산, 해미 그리고 제주도 송악산투쟁 모두 주민들의 자발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투쟁을 거치면서 고양된 국민들의 투쟁은 기지주변 주민들에게도 35년 동안 억눌려왔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깨달음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투쟁의 길에 나서게한 것이다. 기지주변 주민들의 투쟁뿐만 아니라 기지

13) 미군기지반대 전국공동대책위원회 편, 『양키고홈』, 109쪽

14) 제주도 송악산 군사기지설치반대투쟁, 매향리 미군기지반대투쟁, 서산 해미 미공군비행장설치반대투쟁, 미8군 대전 이전반대투쟁, 평택시민운동 등 미군기지반대투쟁은 모두 88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가 이전해 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투쟁의 대열에 나선 지역주민들의 투쟁 역시 6월항쟁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¹⁵⁾

3) 미군기지반대투쟁의 경과와 성과

ㄱ. 제주도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투쟁

88년 8월 제주도 송악산 지구에 군사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정부는 비밀리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해오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부인하지는 않고 군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군사기지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급급하였다.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은 모슬포 주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판단하고 88년 10월 1일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 결사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곧이어 제주도민 대책위, 서울 지역 대책위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송악산 지구에 들어서는 군사기지는 필리핀에서 미군의 기지 사용이 곤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미군의 공군기지라는 추정이 유력했다. 이에따라, 대책위가 결성되어 반대투쟁의 불길을 당긴 것이다. 제주도 대책위에는 각 마을의 이장들이 나서는 등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주민들의 계속적인 반대투쟁으로 결국 기지건설 예정 부지는 89년 5월 2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부 주관의 새 국제공항으로 변경되었다.¹⁶⁾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투쟁은 1차적으로 주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송악산 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의 결합이 매우 튼튼하여 주민들의 자주성이 최대한 보장된

15) 기지반대투쟁은 대부분 기지가 이전해 오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지 이전이라는 사실이 투쟁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에 기지가 존재하던 지역에서는 일상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향리나 군산 옥구의 경우는 기지 주변에서 일어난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경우에는 일상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존재하였다. 투쟁의 구체적인 사례는 미군기지반대 전국공동대책위원회 편, 『양키고홈』참고.

16) 앞의 책 100쪽 참고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상 이해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투쟁의 중심을 정확하게 세운 점과 서울과 연대하여 고립성을 탈피한 것도 승리의 이유가 되었다. 아쉬운 점은 기지건설의 용도변경이 알려진 이후 활동이 부재하여 다시 비밀리에 군사기지가 건설된다고 하여도 속수무책의 상태에 놓인 사실이다.

ㄴ. 매향리 미군사기지 폭음피해 반대투쟁

매향리 투쟁은 군사기지 반대투쟁에 대한 대중적 잠재력과 미군의 본질을 예상해 드러낸 투쟁이다.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와 고온리에 위치한 미7공군의 쿠니사격장은 1951년 겨울에 설치되었다. 쿠니는 고온리의 사격장이라는 말에 민족의 비극이 그대로 담겨 있다. 쿠니는 고온리의 미국식 발음이기 때문이다. 이 사격장에서 미 7공군 소속의 전폭기, 공격용 헬기 등이 사격연습을 한다.¹⁷⁾

매향리 투쟁은 수십년 동안 기지 때문에 당한 피해, 시대적 배경, 지도자의 역할 등이 결합되어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기지 때문에 겪어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십년 전부터 연습 도중 오발과 오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었음에도 주민들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특히 소음피해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미공군이 88년 7월 25일에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에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판명되었을 정도이다.

주민들은 “법 위에 잠자는 자로부터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새기며 드디어 88년 6월부터 대책위를 결성하고 합법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미군측에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자 주민들은 미군 사격장을 점거하는 등 치열성을 보여준다. 주민들이 스스로 미군 사격장을 점거한 것은 미군

17) 폭격연습의 책임자인 앤더슨 소령은 날씨와 지형상 “아시아에서는 공군사격장으로 최적지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기후와 지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 팜, 필리핀, 태국 또는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한문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폭격훈련을 해온 사실이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공군사격장이 된 이유가 아닐까?

주둔 이후 처음으로 보여진다. 주민들은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미국 놈들에게 약탈당한 생존권을 찾기 위하여 대동결집투쟁”한 것이다.¹⁸⁾

주민들의 투쟁이 고양되자 미군은 대책위원장 전만규씨의 논에 모래를 퍼붓고,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부에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등 본질을 역력히 드러냈다.¹⁹⁾ 미군이 이 땅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허구이고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대표적 사실이다.

미군의 물리력에 대항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맨손으로 맞선 매향리 주민들의 투쟁은 기지반대운동의 대중적 전개 가능성을 드러냈다. 매향리 투쟁은 주민들의 자발적 생존권쟁취투쟁이다. 억압과 모순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이고 자주적 대중의 모습을 매향리 주민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정부에게 여러차례 청원하다가 결국 청원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그들은 투쟁과정에서 미군의 실체를 점차 인식하고 미군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다. 매향리 투쟁은 반외세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매향리 투쟁이 반미자주성을 지니게 된 것은 사격장 점거를 계기로 볼 수 있다.

매향리 투쟁은 평화운동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은 생활과 투쟁의 경험으로부터 전쟁반대를 감성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전쟁반대와 평화옹호의 요구를 명확하게 내걸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옹호투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비약이라는 주장은 주민들의 의식이 생활과 투쟁 속에서 발전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오류다.

18) 대책위가 제작한 ‘주민에게 드리는 글 5호’ 위의 책 107쪽 참고.

19) 89년 5월 29일 미군은 전만규씨의 500여 평의 논에 흙과 자갈을 뺏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M16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하여 해산시켰다. 한국정부의 대처는 더욱 기가 막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미군은 한 사람도 처벌을 않고 도리어 미군의 만행으로 농토를 잃은 전만규씨와 머리가 5센치나 찢어진 주민 백동현씨를 구속한 것이다. 같은 해 6월 어장에서 조업에 열중이던 마을주민 손달근씨에게 이유없이 헬기에서 사격했다. 손달근씨는 손을 관통당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하였다.

ㄷ. 미8군기지를 반대하는 대전과 평택 시민들

서울시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용산은 ‘내 땅 아닌 남의 땅’이 된 지 이미 오래다. 1906년 일본군이 자리잡은 이래 미8군사령부가 주둔하는 오늘날까지 용산은 ‘식민지 1번지’로 남아 있다. ‘한국 속의 미국’ ‘미국의 51번째 주’로 불리는 용산땅은 110만평에 이른다. 용산기지에는 한미연합사와 미8군사령부가 있어, 남한 안에 존재하는 군사력인 한국군, 주한미군, 유엔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용산기지에는 ‘핵작전 계획반’이 있다. 피터 헤이즈에 따르면 여기서는 ‘핵 표적을 분석하고 핵 발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²⁰⁾

용산기지는 84년 11월 동작대교가 개통되면서부터 서울시민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다. 5백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 착공한 동작대교가 용산기지 때문에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용산기지는 88년 8월 한미양국정부의 지방이전합의에 따라 조만간 옮겨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²¹⁾ 미8군기지는 용산에 주둔하고 있을 때에는 서울 시민들의 가운데 눈총을 받더니 이제는 이전지역으로 추정되는 대전, 평택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해 있다.

89년 1월 28일자 한겨레신문에는 홍콩신문을 인용한 “현재 서울 중심부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가 앞으로 대전으로 모두 이동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고, 같은 해 4월 11일 23시쯤 KBS가 일본의 산케이신문을 인용하여 미8군의 대전이전을 보도하면서, 이 사실은 대전시민들에게 알려졌다. 교수, 대학생, 기독교 단체들이 즉각, 대전이전을 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시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7월 27일 ‘미 8군 대전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 대중집회 등 대대적 반대운동을 벌

20) 피터 헤이즈 외, 『핵무기는 가라』, 민중사, 68쪽.

21) 90년 6월 25일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이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이전문제를 매듭지었다. 합의각서의 주요한 내용은 ‘96년까지 기지이전을 완료’하고,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여나가 기지이전을 막아냈다. 대전시민들의 기지이전반대투쟁은 시민의 힘으로 군사기지 이전을 막아냄으로써 평화군축운동의 대중적 전개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던져주었다.

그후 90년 3월 28일 한겨레신문에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전으로 내려간다던 용산기지가 대전시민들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평택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평택의 뜻있는 시민들은 비밀리에 하나 둘 씩 모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무렵에 시민들의 비공개 활동은 정말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호주머니를 털어 유인물을 만들고 갖은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면서 마침내는 사무실을 구하고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시민모임’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²²⁾ 시민모임은 이제 평택시민들에게 결코 낯선 단체는 아니다. 시민모임이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막아낸다면 미군기지반대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미군기지가 이 땅에 발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대중적 힘이 바로 기지반대운동에 있다는 것을 평택시민모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4. 맷음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자체는 아직은 졸부들의 명예욕을 살현시켜주거나, 집권당의 권력토대를 강화해주는 등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

미군기지반대운동은 지역주민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제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두머리가 선두에 나서 기지반대 시위를 주도하기도 한다. 미군기지반대운동은 지자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진 참여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을

22)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는 『양키고홈』, 121~122쪽 참고.

실현하는 길이며 기지반대운동의 힘을 강화하는 길이다.

주둔하고 있는 기지에 대한 반대운동은 들어가는 말에서 밝힌 것처럼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 기지반대운동의 주체는 분명히 현지 주민들과 현지 사회단체들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단체들을 뒷받침해주고 여론화시켜내는 것이 자원단체들의 역할이다. 따라서 현재 남한 미군기지반대운동의 중심과제는 90년 10월 30일 발족된 '미군기지반대 전국공동대책위원회'(미대위)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지실태를 조사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것 역시 미대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미군범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신고에서 보상까지 -

1945년 이후 약 10만 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 한국인과 그 가족친지를 합하면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미군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한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미군범죄를 접하거나 했을 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함(목격)에서 재판·배상신청까지의 과정과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미군범죄사를 정리하다 보면 신원미상, 성명불상, 성명미상의 미군들이 많이 등장한다. 범죄미군들이 도망가버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가 미국인의 인상착의나 특징을 꼬집어 말할 수 없는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를 당하면 일단 범죄자의 명찰이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인상착의를 기억해야 한다. 그가 범행 후 도주했다면 어느 곳(기지)으로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71년 10월 4일 이순도 여인은 미유도탄부대 7중대 소속 월리 라세

트 일병 등 미군 8명에게 집단윤간을 당했다. 그는 하도 억울해서 범죄자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날마다 부대 앞에서 기다려 5일 째 되던 날 1명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8명 모두를 검거했다.

목격자(증인)를 확보해야 한다

89년 군산에서 미군에 맞아 숨진 정관용씨 가족은 정씨가 죽어들어 왔을 때 단순한 사고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장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에야 증인이 나타나 미군의 소행임을 알렸다. 증인은 보복이 두려워 목격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고 한다.

목격자 확보는 재판이나 배상신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생생히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그들의 증언을 녹음해두어야 한다.

피해당한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미군기지 철조망 근처의 많은 한국인들이 미군의 총알을 맞고 쓰러졌다. 그때마다 미군은 한국인이 부대철조망을 뚫고 침입하거나 도둑질을 하려 했기 때문에 쏘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는 기실 도둑질을 하지 않았던 자가 많았다.

따라서 피해를 당할 당시 피해자는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있었는가를 동행동료나 다른 수단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횡단보도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사건처리가 다른 것이다.

번진미국이 공물중이었나 아니었나를 확인해야 한다

범행 당시의 미군이 공무중이었을 경우 한미행협에 따라 한국재판을 받지 않고 미군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군들은 자신이 가해 당시 공무집행중이었음을 주장할 때가 많다. 특히 교통사고나 총상, 총살의 경우가 그렇다.

그럼에도 공무중이었나 아니었나에 대한 판결은 미군이 미군 당국에서

발생한 공무증을 소지하고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도록
미해현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겐 절대 불리하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미군의 가해 당시의 행동과 위치를 잘 되살려 공무중이었다고 판단될 때(가령 공무증은 소지하고 있었으나 스텐드비서 춤을 추다 폭행할 때)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파출소와 민주단체에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미군의 신병 피해를 당하면 즉시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미군의 신병 확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미군범죄 처리요령'지침에 따르면 파출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나 그 가족의 신분을 확인한 뒤 즉시 미8군 현병대에 연락하여 미군 현병으로부터 구금인도요청서와 인수증을 받고 미군 당국에 넘겨주게 돼 있다. 그리고 경찰서 의사계는 담당검사에게 보고한 뒤 미8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한다. 이때 가능한 한 3일간의 여유를 주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경찰이 미군을 자세히 조사하기까지는 벌행일로부터 3~5일이 걸린다. 범죄미군을 조사할 때는 미국정부대표 임명자의 입회하에 해야 하며 범죄사실조서 마지막에 입회인의 확인서 명도 받아야 한다.

명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한국경찰이 범행 직후에 기동력 있게 범행 전도를 조사할 순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파출소 신고와 동시에 각 지역 민주단체에 피해를 신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군산지역에서는 이것이 잘 이뤄져 88년 어린이 교통범죄 때 군산·옥구민주연합 회원이 경찰보다 먼저 사건현장에 나타나 현장을 보호했고 증인들을 확보했다.

한국재판부가 과학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한미행협은 많은 미군범죄에 대하여 한국재판부의 관할 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67년 이후 미군범죄의 0.7%만이 한국재판부가 처리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는 사실은 이를 잘 알아하고 있어.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사건개요와 재판권행사에 대한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행협담당검사에게 보낸다. 검사는 처리방침을 세운 뒤 법무장관의 형식적 승인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법무장관이 재판권 행사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의 의견서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판권행사를 전의해도 검찰이 이를 묵살하기 때문에 보통 재판권 포기의견서를 올린다”면서 “이것이 일상화되다 보니 수사마저 안 하게 되고 피해자의 항의에서도 행협을 평계로 내세우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한겨레신문〉, 88. 9. 15).

따라서 피해자는 경찰의 의견서가 위와 같이 ‘수사마저 안 하게’ 되는 상황에서 작성되지 않도록, 검사가 포기의견서를 쓰지 않도록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여론화작업을 해야 한다. 88년 9월 미군 아들의 임신부폭행사건 때 경찰은 입건도 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뒤에야 미8군에 소환장을 보냈다.

한국재판부의 관할여부는 사건발생 후 15일 이내에 결정되므로 그 기간에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77년 어느 부도덕한 법조계 종사자들은 한미행정협정재판이 까다로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배상금을 갈취하는 등의 일을 해오다 적발되었다. 88년 군산 어린이 교통사고를 맡은 변호사는 피해어린이 부모에게 사전 연락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중도포기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믿을 만한 변호사선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민주단체에 문의하여 민주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재판중 증인을 보호해야 한다

67년, 68년의 방화혐의자 콕스와 스몰우드는 재판과정중 증인들에 게 “몰살하겠다”는 협박을 해, 그 덕택인지는 몰라도 무죄선고를 얻어 냈다. 한미관계에서 민감한 재판이므로 증인이 모종의 회유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한국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

여 항소할 수 없도록 한미행협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1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는 관할지역의 지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가서 소정양식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배상심의회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출해 미8군 보상심의회에 통보하고 미군쪽도 자체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다.

보상액이 미흡할 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부는 90년 4월 14일, 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넘어온 미군탱크에 부딪혀 숨진 심웅종씨의 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심씨 가족에게 모두 4천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씨 가족들은 89년 7월 심씨가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383 앞 길에서 봉고차를 몰고가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던 주한미2사단 소속 탱크와 충돌, 결국 심씨가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나의 살아온 이야기 1

박민자(가명)

민자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충격으로 어렸을 때의 기억은 거의 할 수 없다. 오직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같은 사람이 미자씨를 업어서 개울을 건네 주던 장면뿐이다. 그 다음 기억은 고아원같은 곳에서 생활하던 기억이고 그 기억도 역시 필름이 끊기듯 끊겨져서 한참후에 한 시골에서 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 먹으며 생활하던 기억으로 이어진다.

이 기억들을 종합하면 아마도 6·25때 가족과 헤어져서 고아원에 맡겨진 것 같다. 그곳에서는 물을 많이 먹으면 밤에 오줌을 쌌다고 물을 주지 않아 독이 마르면 걸레를 짜먹었다고 한다. 고아원 원장은 밤마다 여자아이들을 불러내 강간을 했는데 민자씨도 9살이 되었을때 불려 나갔다. 더이상 고아원의 생활을 견딜 수 없었던 민자씨는 그곳에서 도망쳤고 시골을 돌아다니며 일해주고 밥을 얻어 먹는 생활을 하였다. 어느날은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는데 중얼거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죽은줄 알고 사람들이 땅에 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서울의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상경하게 되었다. 그때가 13살 내지 14살때쯤인 것 같다. 하지만 서울역에 도착해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무료합숙소에서 자며 길거리에 있는 유리조각을 주워 고물상에 갖다주고 밥한끼 얻어먹는 생활을 하였다. 이때 길거리에서 유리조각을 즐다가 교통사고를 여러번 당했는데 그때의 상처들이 그 이후의 상처들과 함께 민자씨의 전신에 민자씨 인생의 상징처럼 새겨져 있다. 무료합숙소는 서울역 근처의 거지나 같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자는 곳이었는데 민자씨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였고 밤에 여러 아저씨들이 괴롭혔다는 말로 보아 여자아이가 혼자 자니까 남자들이 건드리거나 강간까지도 하였던 것 같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서울역근처 창녀촌의 포주에게 잡혀가서 매춘을 시작하게 되었다. 민자씨는 혼자 길거리에서 남자를 유혹해 매매춘을 하였는데, 버는 돈은 모두 포주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갔고 민자씨는 겨우 하루세끼만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한번은 경찰의 토벌에 걸려 부녀자보호소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곳은 굶어죽거나 도망가다 잡혀서 매맞아 죽는 일 두 가지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생지옥이었다고 한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친구한명과 도망을 쳤는데 재수가 좋아 걸리지 않고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한다. 부녀자보호소를 나왔지만 살아갈 길이 막막해 다시 그 창녀촌을 찾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팔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팔리고 하다가 오게 된곳이 바로 기지촌인 의정부의 송산이었다. 기지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성병진료소에서 성병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했다. 그때까지 민자씨는 주민등록증이 없었다. 그래서 포주가 자신의 호적에 딸로 올려주며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박민자이다.

그때부터 민자씨는 혼인을 상대로 하는 클럽에서 일했다. 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민자씨에게 가장 큰 문제는 피임이었다. 투프나 링을 해봐도 금방 부작용이 생겨서 고생했고 피임약은 먹기만 하면 구토를 해서 복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생각으로 같은 약이니까 피임이 되지 않을까해서 감기약을 30알씩 먹으면서 일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기약으로 피임이 될리가 없는 데다 워낙에 건강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임신이 되어 계속 낙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한번은 8개월째에 낙태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아이를 보니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어서 무척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민자씨는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낙태를 열여섯번정도 했다. 하지만 낙태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임신중에는 물론이고 낙태를 한 그 다음날에도 또 매춘을 해야 했던 생활이었다.

그러다가 한 흑인미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딸을 낳았다. 남편의 임기가 끝나고 미국에 가야 할 때는 겁이나서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는 너무 철이 없어서 남편이 시키는대로 결국 미국에 가게 되었다. 그때가 24살 정도였다. 민자씨가 살게 된곳은 오클라호마의 오지였는데 그곳에서 둘째아이를 낳았다.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 안되었을 때부터 악동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도 마약을 했었던 남편은 미국에 오니 마약의 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서 마약을 구입할수가 없게 되자 점점 난폭해 지더니 급기야는 민자씨를 구타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협박을 했다. 하지만 그 오지에는 공장도 없었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민자씨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 “니가 한국에서 몸팔아 돈벌지 않았냐.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너무 기가막혀서 그냥 들은 척도 않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친구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대려와서는 민자씨의 방에 들여보냈다. 소리소리 지르며 쫓아내곤 하다가 하루는 혹시 질투를 느낄까해서 친구 두명과 번갈아가며 잤지만, 남편은 질투는 커녕 그돈으로 다시 마약을 사버렸다. 그리고 폭력도 점점 심해졌다. 머리를 벽에 짚여서 피가 흐르기도 했고 무자비하게 걷어채이고 짓밟히기도 했다.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 상담센터에 고발을 했다. 그곳에서 나온 사람말이 남편이 잘못한것이니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아이를 키울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자씨 생각에 아이들은 못난 에미보다 아빠와 있는 것이 좋을것 같았고 또 민자씨는 한국에 다시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기로 하고 위자료도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쓰라고 받지 않았다.

이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찾았지만 영어는 물론 한글조차 읽고 쓸 줄 모르는 그녀가 미국에서 할수 있는 일은 매매춘밖에 없었다. 하와이까지 맛사지풀러로 팔려가면서도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러나 맛사지풀러의 생활은 너무도 비참했다. 어떤 손님은 괴생이로 그녀의 항문을 찌르기도 했고 한번은 배를 칼로 찔려 심한 출혈로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이런 고생을 하며 비행기표 값을 겨우 모았을때, 그녀는 그곳을 도망쳐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그녀의 손에는 30달러만이 쥐어져 있었다.

그 이후 10여년 동안 민자씨는 기지촌에서 히빠리 생활을 하였다. 히빠리는 40대에서 50대의 기지촌여성들이 골목에서 미군을 유혹해 적은 돈을 받고 자신의 방에서 매매춘을 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두레방에서 공동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이제 민자씨는 자신의 생활은 궁핍해도 두레방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볼 때마다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민자씨의 모습은 큰 고통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려고 애쓰는 한국 여성의 결코 겪이지 않는 강인한 모습이기도 하다. ■

◎ 나의 살아온 이야기 1,2,3은 두레방의 김현선 간사가 상담내용을 정리, 기록한 글입니다.